

평생교육·유아교육 · 특수교육

◎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개요

▣ 평생교육

01. 단기4285년도 성인교육 추진방침 급 실시요령
02.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03. 제 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
04. 군입대예정 문맹장정 교육에 관한 건
05. 사설강습회 설립인가에 관한 일
06. 각종 사설학원 운영단속
07.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08.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운영개선 방안
09. 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
10. 개방대학 설치계획
11. 사회교육법
12.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 추진
13. 개방대학 발전방안
14. 평생교육법

▣ 유아교육

15.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16. 유아교육진흥법
17. 유아교육 발전방안
18.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 특수교육

19. 특수교육진흥법
20. 특수교육 진흥계획

평생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 개요

광복 이후 현대적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등 기간학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1970년대에 중등교육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은 주요 정책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전면적 교육개혁이 추진된 1980년대 이후로, 이 시기부터 교육복지정책이 강화되었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기간학제의 기본을 갖추고, 고등교육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정책 대상에서 밀려나 있었던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1980년대는 이들 교육분야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룬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로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야의 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간학제의 보완 정책(1945~1980년)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은 개별 교육의 역사로만 본다면, 그 기원이 오래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국민총동원령 하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조직적으로 시행되었고, 유치원이나 유아원도 설립되어 있었다. 또한 1945년에는 기존의 제생원 맹아부를 국립맹아학교로 지정하는 등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도 일찍부터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는 이들 교육에 관한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는 ①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②사범학교, 사범대학, ③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기간학제에 포함되는 학교 이외에, ④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⑤특수학교, ⑥유치원, ⑦각종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는 초기단계의 평생교육과 관련이 깊다.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통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이다. 교육대상층을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유아까지 확대하여, 그 교육시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는 ‘맹자, 농아자, 정신박약자, 기타 심신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 국민학교, 중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 학교이다. 또한 특별한 경우,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처럼 「교육법」에는 제정 당시부터 이들 교육 부문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찍부터 교육정책의 관심대상이 된 것은 공민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책적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초등교육 의무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민학교는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기관이지만, 초등교육 학령기의 아동에게도 필요한 시설이었다. 광복 당시 취학률은 약 47%에 그쳤기 때문에, 정규 국민학교만으로는 초등교육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의 공민학교는 원래의 기능 이외에 초등교육을 보완하는 시설로서도 중요성을 가졌다. 둘째는 학령기를 초과한 자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급히 문맹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수립과 함께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문맹을 해소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였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체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투표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복 당시의 문맹자는 790만명(남한인구 1,600만명의 45%), 1950년대 초에도 여전히 278만명 정도가 문맹으로 추정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선거에서 투표자가 한글을 알지 못해 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은 시급한 과제였고, 이때 각종 공민학교는 문해교육을 시행하는 주요 시설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 점에서 1950년대의 평생교육은 이들 공민학교를 활용하여 문해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정부에서는 1950년대 초부터 대대적

인 문해교육을 시행하였는데, 1952년에 17세부터 42세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성인교육(일명 장정교육), 1953년부터 매년 시행된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1958년에 실시한 군입대에정 문맹자교육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의 문맹퇴치 교육을 통해 문맹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평생교육 정책의 중심은 사설학원(일명 강습소)으로 이동하였다. 1959년 사설학원의 실태를 조사하고, 설립·인가·폐지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나, 1961년 각종 사설학원의 운영에 관한 단속을 강화한 조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이들 사설학원 설립·운영·폐지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또 지역별로 다양하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1960년을 전후로 한 평생교육 정책은 그동안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설학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의 평생교육은 정치적·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보다 확대되었다. 정치적으로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권위주의적 정치가 강화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68년의 ‘국민교육헌장’ 제정에 따른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 1972년 유신헌법 공포에 따른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새마을운동 시행 및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따라 의식개혁 교육이 시행되고,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학급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이전의 평생교육 정책은 각 시기에 따라, 문맹퇴치 교육, 사설학원 단속, 정치교육 강화, 경제의식 개혁 및 산업체 근로자 교육기회 확대 등으로 주안점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평생교육 정책은 아직 엄밀한 의미에서의 평생교육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70년대까지는 아직 기간학제조차 충분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만큼 이 시기의 평생교육은 부족한 기간학제를 보완하는 보조교육으로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예를 들어, 1950년대의 문맹퇴치 교육은 초등교육의 의무화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민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초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1970년대의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운영은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1960~1970년대의 각종 정치의식 강화 교육은 일반 학교교육과 연계되어 일사불란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과도 관련이 있었다. 결국 1970년대까지의 평생교육 정책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평생교육 정책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정치적·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찍부터 정책추진의 대상이 된 것과는 달리,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은 정책적으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유아교육의 경우는 1969년에야 문교부령으로 유치원교육과정이 제정되었고, 1970년대 말까지 취원율이 2%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규모도 작았다. 이러한 양상은 1965년 이후의 원아수와 취원율 동향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원아수 및 취원율의 변화(1965~1995년)

연도	원아수(명)	취원율(%)
1965	19,566	1.0
1970	22,271	1.3
1975	32,032	1.7
1980	66,433	4.1
1985	314,692	18.9
1990	414,532	31.6
1995	529,265	39.9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7, 37쪽

【표 1】에 의하면, 1975년까지 원아수는 32,032명이고, 취원율은 전체 취원대상자의 1.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 이후 변화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원아수 529,265명, 취원율 39.9%로 급증하였다. 약 20년 동안 원아수는 7.9배, 취원율은 23.4배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1980년을 전후로 유아교육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그에 따른 유아교육정책도 이전과 달라지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특수교육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당시까지 특수교육은 주로 시각 및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맹아학교나 농아학교 위주로 운영되었고, 1960년대 말에 전국에 33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을 뿐이다. 1965년 이후 초등학교 단계와 중학교 단계의 특수학교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초등학교 단계 특수학교 현황(1965~1995년)

연도	학교수(교)	학급수(실)	학생수(명)
1965	20	133	1,892
1970	32(1)	242	3,478
1975	49	462	5,504
1980	57	583	7,059
1985	86	777	10,347
1990	104	1,031	4,424
1995	108(2)	1,080	3,682

* ()는 분교수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7, 57쪽

【표 3】 중학교 단계 특수학교 현황(1965~1995년)

연도	학교수(교)	학급수(실)	학생수(명)
1965	20	36	439
1970	32(1)	42	446
1975	49	54	727
1980	57	86	1,252
1985	86	191	2,809
1990	104	399	4,917
1995	108(2)	487	5,553

* ()는 분교수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1997, 75쪽

【표 2】와 【표 3】에서 초등학교 단계와 중학교 단계의 특수학교수가 동일한 것은 특수학교가 이 두 교육과정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학급수와 학생수가 되는데, 1980년대 이후 학급수와 학생수 모두 빠르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복지 확대 정책(1980년대 이후)

1980년대 이후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제 분야에 관한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는 1970년대까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간학제가 어느 정도 정착하자,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여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둘째는 1970년대에 국내외에서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1970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 교육의 해(International Education Year)’를 선포하여 평생교육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국내에서도 「사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1988년 국제장애자올림픽 대회 유치로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셋째는 1976년에 북한이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유아교육 관련 법을 제정하자,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유아교육을 주요 교육정책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에는 국내외에서 평생교육의 확대, 유아교육의 강화 그리고 특수교육의 다양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1980년대 이후 이들 제 분야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은 1979년에 문교부가 수립한 장기교육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계획은 197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한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1978~91’라는 정책보고서에 기반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교육복지의 강화를 통한 평등균등의 실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유아교육의 보편화, 특수교육의 진흥에 관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우선 평생교육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향후의 사회가 학교교육만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평생교육체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취업자 고등교육기회 확대, ②방송통신대학 개편·강화, ③산학협동의 증진, ④사회교육법의 제정, ⑤사회교육 지도자 양성 강화, ⑥지역별 사회교육관 설립, ⑦공공도서관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1980년대 이후 평생교육정책에 반영되었다. 첫째, 취업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산학협동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는 개방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개방대학은 1970년대부터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대학으로서, 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지향한다. 국내에서는 1981년에 ‘개방대학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1982년에 최초로 경기개방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둘째 방송통신대학의 개편·강화 정책은 이미 1972년부터 서울대학교 부설로 설립되어 있었던 한국방송통신대학을 1981년에 학사과정의 5년제 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은 65,000명 정도였는데, 이후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셋째 「사회교육법」의 제정은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현실화되었다.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 분야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지도자 양성 강화, 지역별 사회교육관 설립, 공공도서관의 확충 등과 같은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수월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의 보편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수준의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첫째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991년까지 취원율을 70%로 증가시키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유아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우수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유아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82년 3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을 수립하였고,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발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35호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84년에는 이전의 계획을 수정하여 ‘유아교육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미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기회의 확충과 질적 수준의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정책으로는 ①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치료교실의 증설, ②종합교육과 분리교육의 병행, ③특수교육 교원의 확보, ④직업교육의 강화, ⑤특수학교의 모형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하였다. 이후 문교부는 1984년에 특수교육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특수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의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은 문교부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법안의 제정 등을 통해 일정한 정책 방향 하에 추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들 분야의 교육정책이 한 단계 진전되는 조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평생교육에서는 1999년에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법률 제6003호)으로 개편된 점을 들 수 있다.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 분야가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이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평생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평생교육법」의 제정취지에서, 평생교육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생학습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이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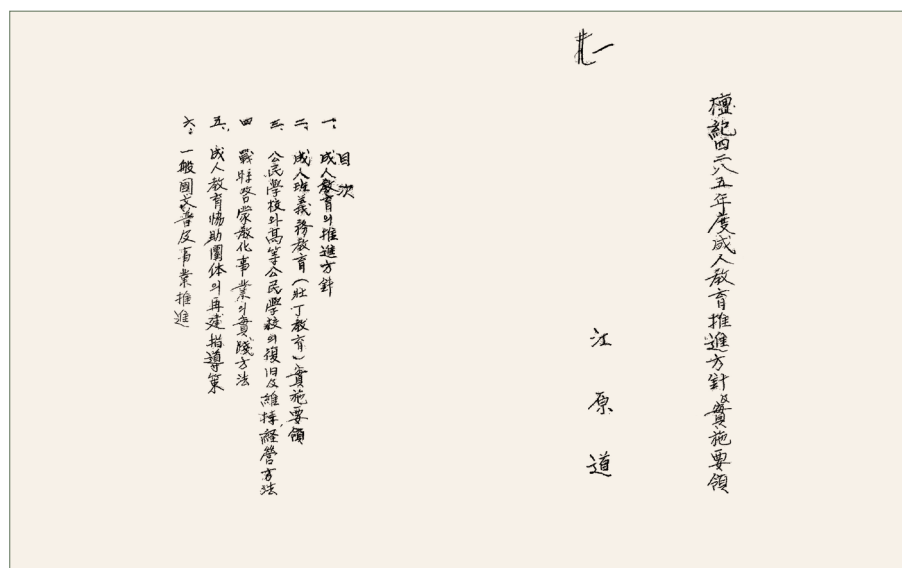
또한 유아교육에서도 1997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6년 4월 제2기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0년대의 유아교육 정책은 취원율을 증가시키는 데에 집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립보다는 사립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취원율은 증가하였지만, 저소득층의 취학기회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시행하자는 정책이 제안되었고, 2005년까지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관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이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현대 교육체제가 새로운 변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단기4285년도 성인교육 추진방침 급 실시요령

관리번호 : BA0392443
 쪽 수 : 12
 생산년도 : 1952
 생산기관 : 강원도 원주시

「단기4285년도 성인교육 추진방침 급 실시요령」은 「교육법」을 근거로 수립된 성인교육 추진방침 및 실시요령에 관한 문건이다. 성인교육 계획은 1950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연기되어 1952년도에야 시작되었고, 정부예산이 반영된 실질적인 사업은 1953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이 기록물은 문교부의 지침을 받아서 강원도가 작성한 문건이다.



【그림 1】〈단기4285년도 성인교육 추진방침 급 실시요령〉표지 (BA0392443, 1쪽)

성인교육 실시 근거는 「교육법」 제139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 조항은 “초등교육을 전연 받지 못한 성인에게 국문을 해득케 하기 위하여 공민학교에 성인반을 둔다. 성인반의 수업기간은 200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높은 문맹률을 해

소하고 학령이 지난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교육하는 과제가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성인교육은 6.25전쟁의 발발로 애초의 계획보다 연기되었고, 더욱이 전쟁이 길어짐으로써 국민의 사상적 통일성과 불안의 해소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재정을 투입되지 못하면서도 문교부는 1952년부터 일명 장정교육(壯丁敎育)이라는 명명으로 성인반 의무교육을 계획하였고, 1953년에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각 도별 성인교육을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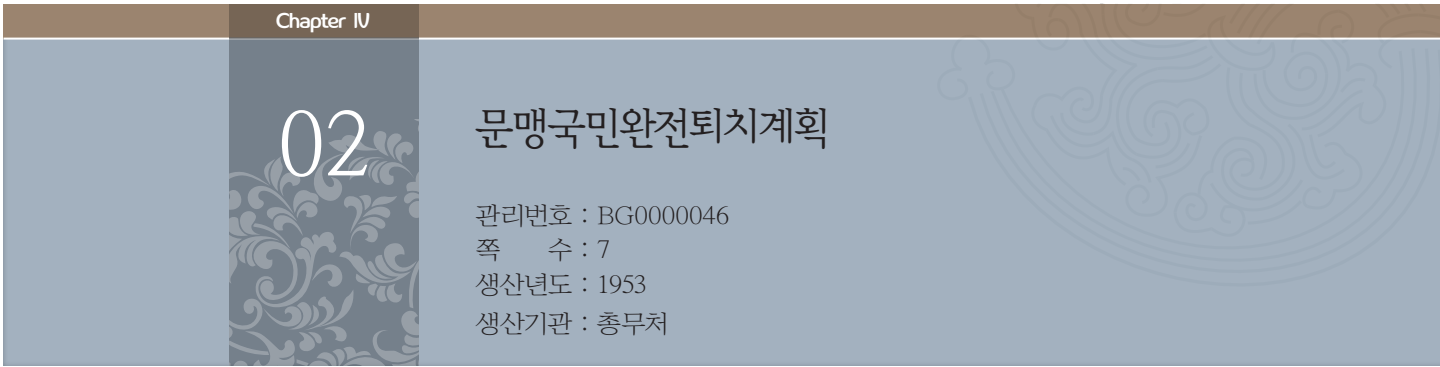
이 문서는 문교부의 계획에 따라 강원도에서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총 6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성인교육의 추진방침(제1항목)에서는 이 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고, 성인반 의무교육(장정교육) 실시요령(제2항목)에서는 17세부터 42세까지의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반 교육의 운영방침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복구 및 유지 경영방법(제3항목)에서는 전쟁기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이들 학교를 재개하는 조치를 담았고, 전시계몽교화사업의 실천방법(제4항목)에서는 전쟁기의 국민정신교육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성인교육협조단체의 재건지도책(제5항목)에서는 각 지역별로 설립되어 있었던 사단법인 대한성인교육회의 지부에 대한 조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일반국민보급사업추진(제6항목)에서는 성인반 의무교육(장정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문맹자, 특히 부녀자에 관한 조치를 수록하였다.

이처럼 이 계획은 「교육법」 당시부터 구상했던 공민학교 교육, 전시 하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성인 대상의 문맹교육과 정신교육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 및 부녀자 문맹교육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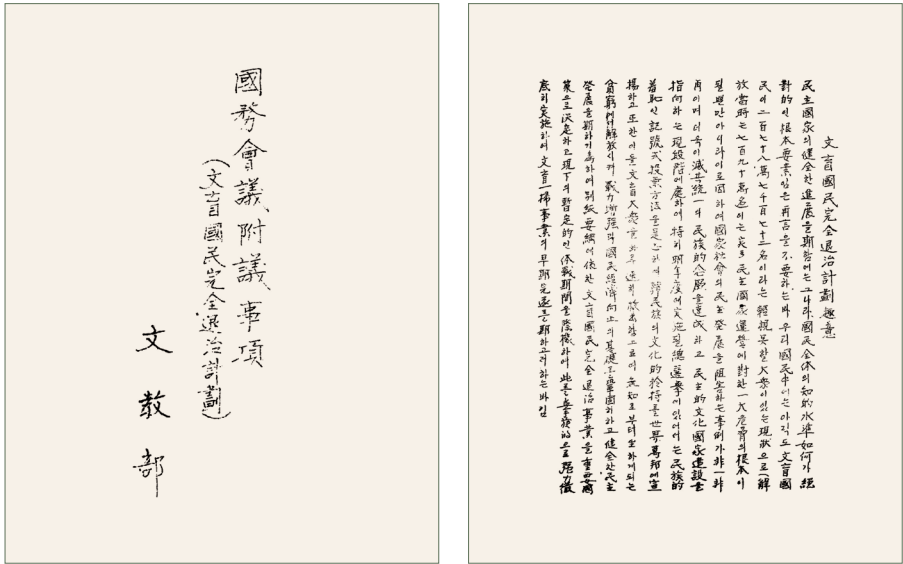
이 점에서 이 계획은 정부수립 직후의 성인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과 함께 전쟁기의 특수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공민학교에 관한 조치는 국민학교에 부속된 공민학교는 향후 공립학교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전쟁이 진행 중인 당시에는 당분간 대한성인교육회 각급지부장 명의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인이 설립한 공민학교는 대한성인교육회 또는 일반인이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학교의 교직원을 기본적으로 겸임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교사나 강사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성인반 의무교육에 관한 조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17~42세의 성인 문맹자를 대상으로 출석 70일, 수업시간 200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은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는 성인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계획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서는 면장을 중심으로 해당자 명단을 작성하고, 각 시기별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밀하게 규정하였다. 둘째는 수료기준이 단순한 국문해독이 아니라 국민적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계획에 의하면 성인반은 국민학교 3학년 수준의 국문 독해력 함양을 목표로 하였고, 이외에 국민의식, 전쟁 극복 의지 그리고 직업진로와 같은 기초소양을 교육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일반 문맹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교육은 유명인사의 순회강연, 유명인사의 글 강독회, 생활교육, 한글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활동을 권유하였다. 이 점에서 이 계획은 비록 전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대상의 문맹교육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의미를 갖는다. 해방 직후부터 시행된 일반인 대상의 문맹교육 이외에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활용과 성인반 의무교육의 시행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1953년에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에 통합되어 시행되었다.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은 문교부가 수립한 문맹자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이다. 1952년도에는 성인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공민학교를 재개하였는데,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은 1953년 휴전이 되자 이전의 문맹퇴치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록물에는 1953년 하반기에 국무회의 부의사항으로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취의,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실시요강(17개 항목),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 문맹자 조사표(단기 4286. 6. 15현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2】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 표지 및 내용 (BG0000046, 304쪽, 305쪽)

광복 이후 한글 보급과 민주주의 의식 함양은 시급한 과제였다. 광복 당시 문맹자는 790만 명에 이르렀고, 이것은 남한 추정인구 1,600만 명의 45%에 이르는 수치이다. 정부수립 이전까지 문맹교육은 주로 개별적인 사업으로 시행되었고,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곧 이어 발발한 6.25전쟁으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부터 성인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공민학교를 재개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53년 당시의 문맹자는 약 278만명 정도로 줄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문맹률은 17.3%에 달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민투표에서 기호식 표기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1954년에 예정된 국민투표에서는 기호식 투표방식을 일소하고, 국민문맹의 완전해소를 목표로 범정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본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이다. 계획의 취지문에서는 문맹의 완전해소가 민주국가 건설, 경제발전과 빈곤에서의 탈출 그리고 민족통일을 위해서 국민의 지식수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최단시일내로 국민 개학(皆學)의 실(實)을 거양(擧揚)하여 문맹국민의 완전 일소(一掃)를 기하며 명년도(明年度)에 실시할 총선거에 있어서 기호식(記號式) 투표방식을 없앴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시행대상은 만 17세 이상 문맹자 2,787,172명(남 1,045,414명, 여 1,741,758명)이고, 시행시기는 1953년 11월 17일부터 1954년 4월 15일까지 2차례 시행하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시행의 주체는 중앙·특별시 및 도·군 단위로 조직하도록 하였는데, 중앙에서는 문교부 주도 하에 내무부와 국방부가 협력하고, 특별시 및 도에서는 특별시장과 도지사가 총괄하며, 군에서는 교육구의 교육감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제 실천기관은 시·구·읍·면 단위별 단체장으로서 해당 지역 국민학교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즉 조사계획, 시설 및 재정은 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구청장 및 읍·면장이 담당하고, 수업지도는 각 국민학교장이 책임지며, 취학독려는 경찰관서의 장이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단 및 기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은 중앙정부의 문교부, 내무부, 국방부가 공동 추진하고, 각 행정단위의 장과 시·구·읍·면의 최말단 행정기구까지 총동원하여 모든 문

맹국민을 대상으로 수립한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시간은 9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주간반이나 야간반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1일 수업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장소도 지역 형편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다수의 문맹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독자적으로 한글 교육반을 설치하도록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문맹퇴치교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맹교육을 질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문맹교육 담당 교사는 국민학교 및 공민학교의 교사가 맡도록 하였고, 교사가 부족한 경우 인망과 지식을 갖춘 인사에게 위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대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1억 4,520환으로, 여기에는 교사수당, 수용비, 독려 및 지도비, 그리고 교재인쇄비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은 이전의 성인 의무교육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계획의 대상자 2,787,172명은 17~43세의 성인 의무교육 대상자(1,432,935명) 및 44세 이상의 일반국민보급 대상자(1,028,827명)를 합쳐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자(2,461,762명)라고 하고, 여기에 12~16세의 공민학교취학 대상자(325,410명)를 더하여 산출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된다. 이는 이 계획이 12세 이상의 모든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문맹퇴치계획으로 수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이 계획은 강력하게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보였고, 이후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계획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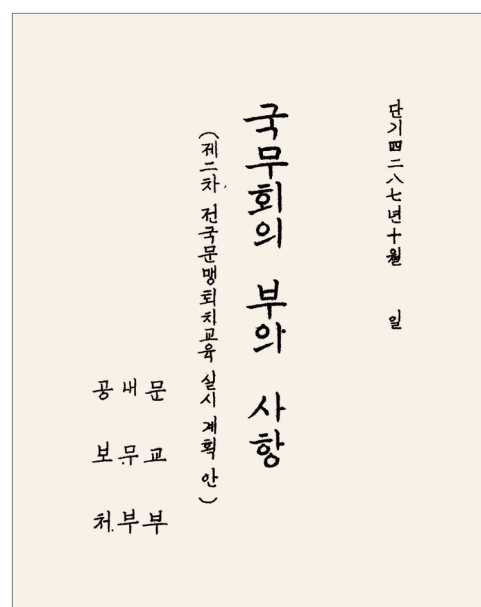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084198

쪽 수 : 24

생산년도 : 1954

생산기관 : 총무처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은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의 후속 계획으로서, 만 12세 이상의 문맹국민을 완전히 일소하는 목적에서 수립되었다. 이 기록물은 1954년 10월에 문교부, 내무부, 공보처 공동 명의로 국무회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실시계획 개요,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의 취지와 목적, 소요경비 요구명세서, 보조금 배부 상황(시도별표), 실시요강(9개 항목), 서식(5개 종), 추진계통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3】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 표지 (BA0084198, 310쪽)

월 1일부터 1955년 1월 29일까지 60일 동안 시행하되 수업시간은 150시간으로 하였다. 교육대상은 만 12세 이상 문맹자 전원이고, 소요경비는 총 1억 3,928만 9,740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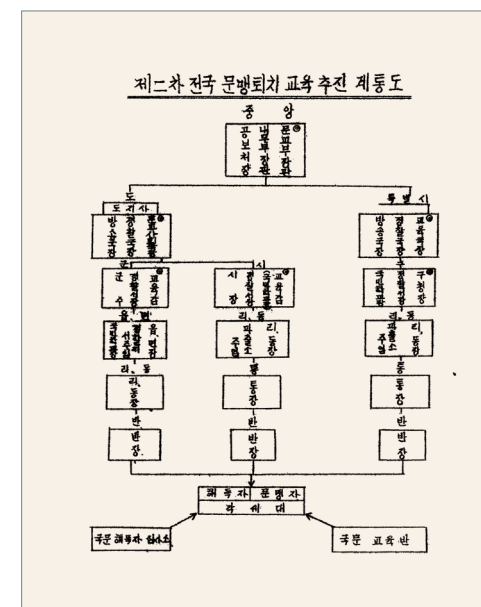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은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의 후속 계획이다.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은 1954년 3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총 2,689,694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1,972,115명이 국문을 해독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시에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수료하지 못한 자 그리고 새롭게 문맹자로 조사된 자가 여전히 1,173,144명으로 조사되었다.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1954년 12

으로 책정되었다. 교육반은 리·통을 단위로 2개반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총 18,201개 리·통에 40,000개의 교육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시행요강은 1953년에 수립된 ‘문맹국민완전퇴치계획’과 대동소이하지만, 이전에 비하여 보다 철저하게 계획되었다. 이 점은 사업홍보, 시행조직, 문맹자 조사, 수업실시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선 사업홍보 면에서는 이전에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방송과 신문을 통해 사업의 계획과 취지를 알리고, 버스 및 전차 정거장 등 교통기관에 선전물을 부착하고, 각 학교에서는 문맹퇴치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우표를 발행하여 문맹퇴치를 홍보하거나 학생 및 지도층 인사에게 완장이나 흉장을 패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은 이전의 국방부 대신 공보처가 핵심 협조부서로 대치되었다.

다음으로 시행조직 면에서는 이전 보다 담당 행정단위를 하부로 확대하였다. 이 자료 마지막에 수록된 ‘제2차 전국 문맹퇴치교육 추진계통도’를 보면, 중앙의 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공보처장 휘하에, 특별시와 각 도의 조직이 표시되어 있고, 최말단에는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장 및 반장까지 공식적인 담당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은 문맹자 및 문해자의 조사, 취학 독려, 교육반 설치 등의 실질적인 임무를 맡고 있었고, 그만큼 문맹퇴치 교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최말단의 행정단위까지 이 계획의 계통도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림 4】 제2차 전국 문맹퇴치 교육 추진 계통도 (BA0084198, 3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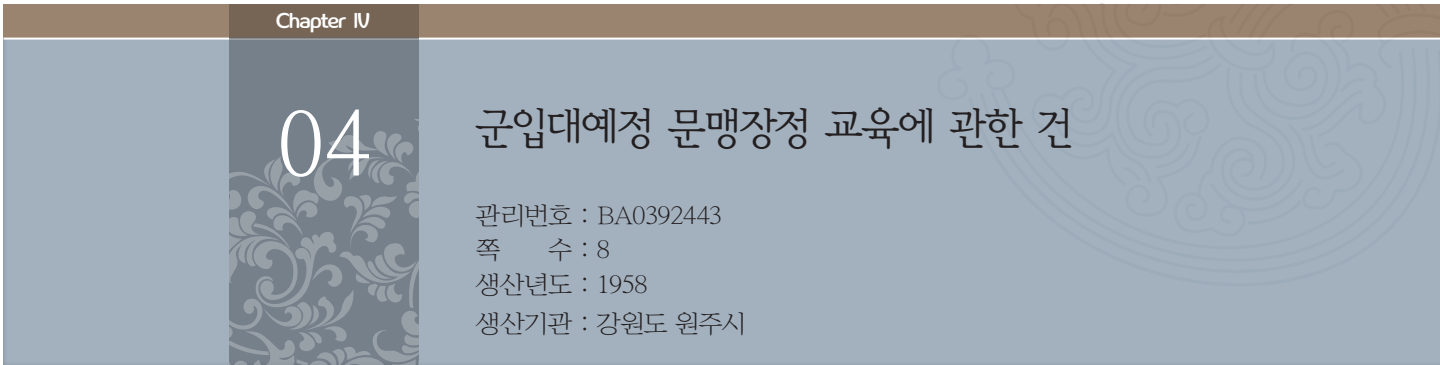
다음으로 문맹자 조사는 각 리장과 동장이 통장 및 반장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별로 19세 이상의 문맹자 전원과 12~18세의 문맹자 및 문해자 전원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때 소정의 평가를 거쳐 문해자로 인정받지 않는 한 모두 문맹자로

표기하고, 또한 문해자의 자료도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의 부록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조사서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호 서식 ‘문맹자 조사 자료표’는 문맹자 개인별 인적 사항을 조사하는 양식이고, 2호 서식 ‘○○국문교육반 요취학결정자 명부’는 각 교육반별 취학대상자 명단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실시 면에서는 1차 계획보다 이수시간을 강화하였고, 국문해독의 기준을 국민학교 2학년 수료 정도의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문해 기준을 이전보다 상향시킴으로써, 비록 1차 문맹퇴치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하더라도 재교육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수업시간을 이수하고 소정의 검정고시를 통과한 자에게는 국민학교장이 수료증을 수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제2차 전국문맹퇴치교육 실시계획(안)〉은 이전보다 철저하고 광범위한 조직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교육실적이 높았고 문맹률을 낮추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군입대예정 문맹장정 교육에 관한 건〉은 1958년에 각 지역에 통보된 군입대 예정자 대상의 문맹교육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록물에는 원성교육감, 원성군수, 원주 경찰서장 공동의 명의로 해당 지역의 국민학교장, 면장, 지서주임에게 전달한 공문으로서, 뒤에는 강원도 문교사회국장, 내무국장, 경찰국장이 각 지역의 교육감, 시장 및 군수, 경찰서장에게 전달한 공문과 ‘군입대예정 문맹장정에 대한 국문교육 실시요강’이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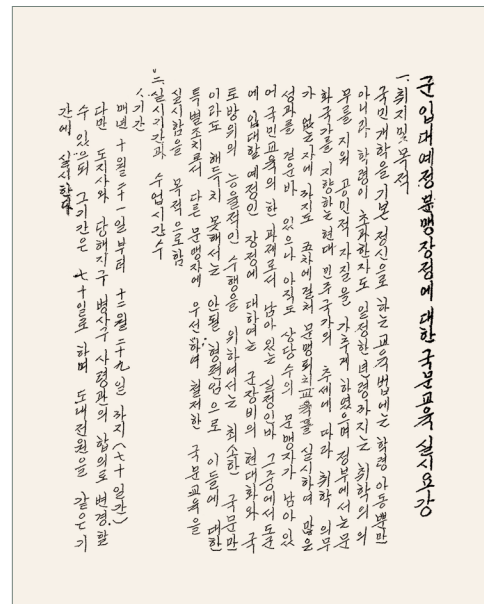


【그림 5】 〈군입대예정 문맹장정 교육에 관한 건〉 표지 (BA0392443, 21쪽)

195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국 문맹퇴치교육은 1958년까지 5차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 문맹률은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특히 군에 입대할 연령층에 상당수의 문맹자가 남아 있었다. 군입대 예정자의 문맹 문제는 문교부와 국방부 공동의 관심사였다. 문교부는 「교육법」 제140조에 명시된 조항, 즉 “단기 4283년(서기 19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령초과자로 국문을 해득하지 못하는 자는 공민학교 성인반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시행해야 했고, 국방부는 문맹자 때문

에 국방행정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를 조사하고, 취학을 독려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내무부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림 6】 군입대예정문맹장정에 대한 국문교육 실시요강 (BA0392443, 25쪽)

결정자 명부를 공민학교 및 학구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민학교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교육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징병검사의 불합격자(정종·무종) 전원이 된다. 다음으로 교육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공민학교 교장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수업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소정기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고사를 실시하여 수료증을 교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연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대상자의 취학을 독려하는 책임은 해당 지역의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지서 및 파출소 주임)이 맡았는데, 경찰관서의 장은 수시로 취학을 독려하고 공민학교 교장으로부터 독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군입대 예정자 문맹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각 도 도지사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년도 문맹장정 교육추진 계획서’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개월 전까지 문교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간 중에는 교육의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교육담당자는 관련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공민

이에 따라 1958년에 문교부, 국방부, 내무부의 공동 명의로 군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맹교육계획을 수립하였다. 군입대예정자 문맹교육은 매년 10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70일 간 특별시 및 각 도별로 개설하도록 하였고, 수료에 필요한 수업시간은 200시간 이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대상자 조사, 교육시설 및 수업 관리, 취학 독려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우선 교육대상자 조사는 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구 교육감 그리고 병사구사령관(시·읍·면장)이 합동으로 시행하고, 취학

학교 교장은 개강 후 5일 이내에 ‘취학상황표’를 작성하여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교육감은 개강 후 15일 이내에 ‘취학결정자 및 취학상황표’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도지사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육대상자 및 취학상황표’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즉 매년 초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각 도 별로 그 해의 교육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강 후 30일 이내에 공민학교 교장 → 시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 교육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및 각 도 도지사 → 문교부에 이르는 교육상황 보고를 완료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문맹교육 시행체계는 당시까지 시행되고 있었던 국민문맹교육 시행체계에 따른 것이고, 다만 군입대예정자를 특화해서 적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군입대 예정 문맹장정 교육에 관한 건〉은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따른 1958년도 강원도 원성군 지역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설강습회 설립인가에 관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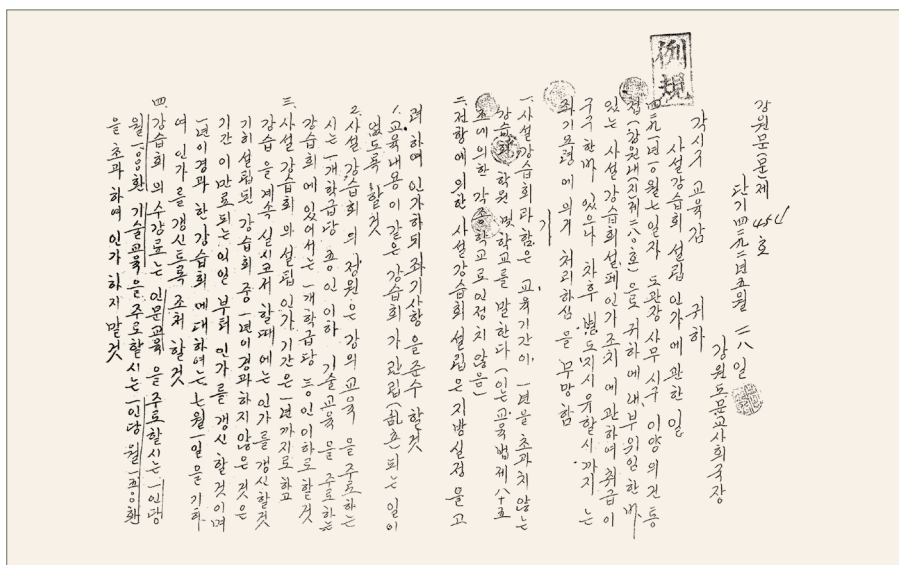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392443

쪽 수 : 4

생산년도 : 1959

생산기관 : 강원도 원주시

〈사설강습회 설립인가에 관한 일〉은 각 지역의 사설강습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설립·인가·폐지의 기준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이 기록물은 1959년 6월 1일자 강원도 원성구 교육감이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에게 보고한 관내 사설강습회 설립·인가 현황 공문이다. 뒤에는 5월 28일자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이 각 시구 교육감에게 보내는 사설강습회 현황 조사보고 요청 및 ‘사설강습회 설폐인가 조치(9개 항목)’와 5월 21일자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이 원성 교육감에게 보내는 ‘사설강습회 설폐인가 지령용지’ 송부 안내 공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



【그림 7】 〈사설강습회 설립인가에 관한 일〉 표지 (BA0392443, 54쪽)

사설강습회는 교육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이다. 사설강습회에는 강습회, 학원, 학교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고, 설립과 폐지가 일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설강습회가 기본적으로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일정한 인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은 1958년 10월에 각 교육구의 재량사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설강습회의 인가기준은 각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았고, 사설강습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는 점차 동일한 교육내용을 시행하는 사설강습회가 난립하고, 설립자의 교육관이나 재정상황의 부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수강료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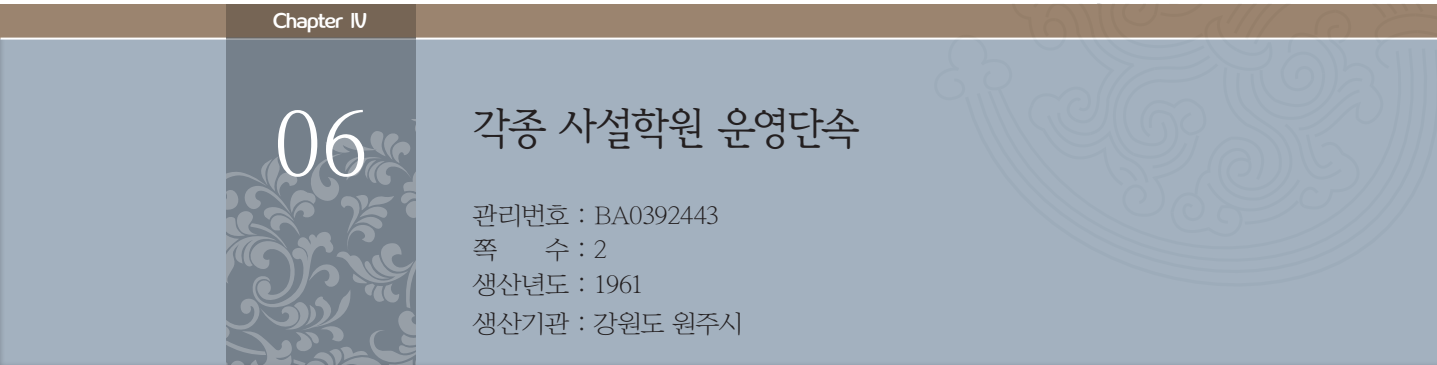
이 때문에 문교부는 비록 「교육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교육법시행령」 가운데 학교설립·인가·폐지에 필요한 구비서류 조항을 원용하여 사설강습회도 설립·인가·폐지의 경우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전조치로서 각 지역의 사설강습회의 설립·인가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사설강습회의 설립·인가·폐지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구에 위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사설강습회 인가행정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기준은 향후 사설강습회를 대상으로 한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총 9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에서는 사설강습회의 개념을 명시하여 각종학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간 1년 이하의 강습회, 학원 및 학교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최소한의 인가기준으로 동일한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원기준은 강의교육인 경우 학급당 50명, 기술교육인 경우 학급당 30명으로 제한하였다. 제3항은 인가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매년 갱신하는 원칙과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과도적인 조치를 담았고, 제4항은 수강료에 관한 것으로 인문교육 기관은 1인당 월 1,000환, 기술교육 기관은 월 1,500환을 상한선으로 정하였다. 제5항에서는 사설강습회를 인가할 때, 「교육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원용하여 소정의 서류를 접수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는 설립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장이 조사한 신원조사서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재산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 제7항은 인가된 사설강습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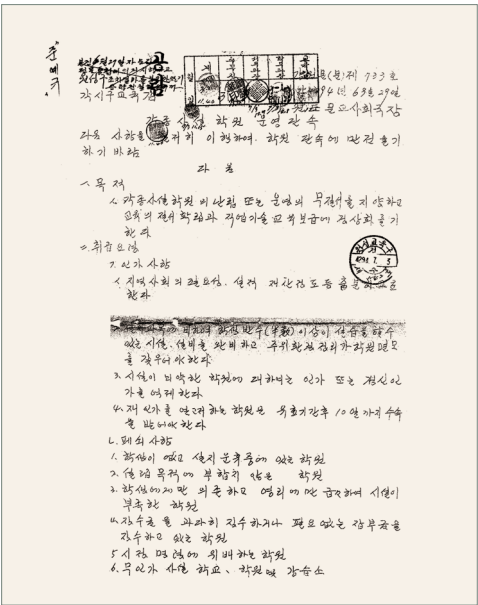
감독을 명시하고, 만일 설립목적과 학칙 등을 위반할 경우와 사회교육상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제9항에서는 1959년 5월 20일 현재 관내에 설립된 사설강습회 일체의 상황을 조사하여 6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조사 항목은 각 사설강습회별로 인가번호, 인가 연월일, 인가자, 강습회 명칭, 설립자, 교육기간(개월), 학급수, 피교육자 현재 총원, 학급당 인원 등이고,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사설강습회의 경우는 별도의 비고란에 부기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이러한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의 요청에 따라 1959년 6월 1일에 원성구 교육감이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에게 회신한 공문으로, 1959년 5월 20일 현재 원성구에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설강습회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 사례는 1950년대 후반부터 그 동안 교육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사설강습회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1961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호)이 제정될 때까지의 과도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각종 사설학원 운영단속」은 1961년 6월 29일자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이 각 시구 교육감에게 보낸 각종 사설학원에 대한 단속지침이다. 이 기록물은 강원도 원성구 교육감에게 통지된 것으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정비 조치를 담고 있다.



【그림 8】 〈각종 사설학원 운영단속〉표지
(BA0392443, 213쪽)

광복 이후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학교만이 아니라, 각종 사설강습회(강습회, 학원, 학교 등)도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까지 이들 사설강습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고, 설립에 관한 사항도 각 교육구에 위임되어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처음으로 사설강습회에 대한 인가기준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에 각 지역 교육구에 시달된 ‘사설강습회 설립인가에 관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정규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치였고, 또한 제재도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

설학원의 난립과 운영상의 부실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문제

의 척결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1차적인 관심은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육기관이었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설강습회에 대한 규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당시 정규 교육기관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 9. 1, 법률 제708호), 「학교정비기준령」(1961. 12. 9, 각령 제283호), 「사립학교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등 일련의 법령이 제정되었고, 사설강습회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61. 9. 18, 법률719호)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각종 사설학원 운영단속〉은 이러한 각종 교육기관의 정비 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직전에 각 교육구의 불법 난립 사설강습회를 규제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다. 강원도 문교사회국장이 각 지역 교육감에게 관련 공문을 시달한 시기가 1961년 6월 29일인 것은 이 점을 확인시켜 준다. 〈각종 사설학원 운영단속〉에는 단속의 목적과 주요 취급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단속의 목적에서는 “각종 사설학원의 난립 또는 운영의 무질서를 지양하고 교육의 질서 확립과 직업기술교육 보급에 정상화를 기한다”고 하여 특히 직업기술교육과 관련된 사설학원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요 취급요령은 인가에 관한 사항, 폐쇄에 관한 사항, 단속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가에 관한 사항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술교육 관련 사설학원의 경우 교육과정의 1/2 이상을 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도록 하고, 이러한 시설 기준이나 교육환경에 미달하는 경우 인가를 억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해당 학원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도, 교육실적, 재산정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가하게 함으로써, 인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실운영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폐쇄에 관한 사항에서는 학원의 폐쇄 조건을 ①학생이 없고 실지 유휴 중에 있는 학원, ②설립 목적에 부합치 않는 학원, ③학생에게만 의존하고 영리에만 급급하여 시설이 부족한 학원, ④징수료를 과다히 징수하거나 필요없는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는 학원, ⑤시정명령에 위배하는 학원, ⑥무인가 시설 학교·학원 및 강습소, ⑦설치학과에 대하여 전공한 전문교사 배치가 전무한 학원 등 7개 조항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무인가 학원은 물론, 인가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학원이라도 일정한 조건에 미달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해당 학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육구 교육감의 권한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설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 그리고 제재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5. 16 직후의 비상시국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이 규정은 곧이어 제정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신설된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의 의지는 마지막의 단속후 결과보고의 항목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학원 설립·폐지·인가 사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 및 무인가 사설학원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관계 직원을 문책한다고 경고하고, 무인가 학원을 폐쇄 조치한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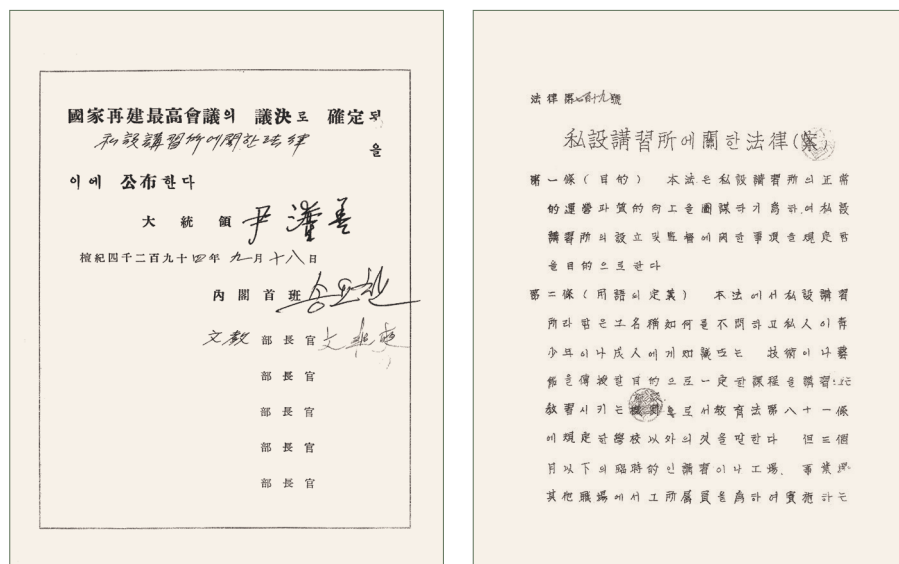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536205

쪽 수 : 23

생산년도 : 1961

생산기관 : 법제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1961년 9월 18일 법률 제719호로 제정되었다. 전문은 11개 조문과 부칙 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법률공포 승인요청 공문, 법률공포 승인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내각수반이 국가재건최고회의장에 보내는 법률공포 통지 공문, 내각 사무처장이 공보부장관에게 보내는 법률공포 요청 공문, 내각사무처장이 문교부 장관 및 국가 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에게 보내는 법률공포 통지 공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국가재건최고회의 심의의결 요청 공문,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안)」 의결주문 등이 포함 되어 있다.



【그림 9】〈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표지 및 내용 (1A00614174536205, 5,258쪽, 5,259쪽)

사설강습소는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설강습소는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시설, 교사진 등에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명칭도 ○○학원, ○○학교, ○○강습회 등 일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도 통일되지 않아서, 1950년대 후반에는 사설강습회나 사설학원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아직 학교 외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까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령으로는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1913년, 칙령 제3호)이 남아 있었는데, 이 법령에는 사설강습소의 단속에 관한 실제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광복 이후 학교교육은 물론 학교 외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설강습소는 정상적으로 설립·운영되지 못하고, 법령의 밖에서 난립하여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사설강습소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설강습소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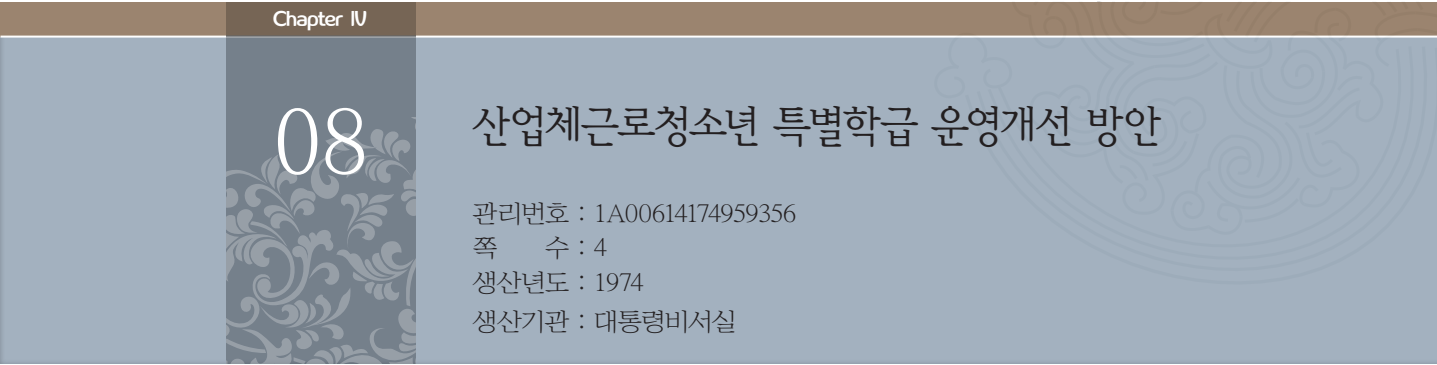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주안점은 인가제 실시와 단속의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사설강습소의 인가제 실시는 이전의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사설강습소에 대한 인가제 자체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인가업무가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각 교육구에 위임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 법률에서는 인가제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제3조),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 기준, 사설강습소 교직자의 자격, 수강료 등을 별도의 각령으로 제정하도록 함으로써(제4조, 제11조), 인가 당시부터 해당 사설강습소의 교육적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단속의 강화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각 도지사가 해당 지역 사설강습소의 인가·운영에 대한 승인 및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각 도지사는 사설강습소의 인가를 승인하는 인가청의 자격을 가지고(제3조), 인가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설강습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다(제6조, 제7조). 또한 인가청은 사설강습소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가청의 이러한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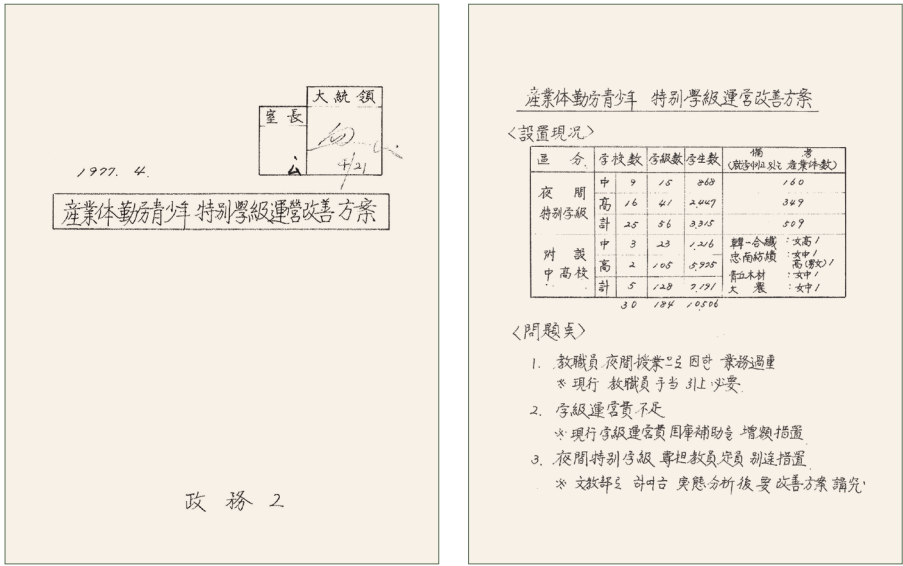
동 법률에는 폐쇄명령에 관한 사항과 벌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제8조).

폐쇄명령의 조건은 ①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②시설기준 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허위로 보고한 경우, ④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열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⑤정당한 사유없이 개강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강하지 않은 경우, ⑥소정의 휴강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2개월 이상 휴강한 경우, ⑦기타 법령에 기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세밀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는 무인가, 불법인가, 폐쇄명령 위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설강습소의 인가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제10조).

이처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방임상태에 있었던 사설강습소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설강습소를 사회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교육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후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에 관한 교육정책적 조치가 강화되는 계기로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운영개선 방안〉은 1977년 4월 정무2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이다.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은 1976년 「교육법」의 개정에 의해 1977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곧바로 시행상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기록물에는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설치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건의에 관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10】〈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운영개선 방안〉표지 및 내용
(1A00614174959356, 36,690쪽, 36,691쪽)

1970년대는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청소년의 취업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또는 교육적으로 새로운 과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체근로청소년의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교

육적으로는 학령기의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법」을 개정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주로 하는 별도의 학교 또는 학급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산업체근로청소년특별학급의 운영은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면이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의 상용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업체는 이들에 대한 특별학급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부 이외에 상공부, 내무부, 노동부가 관여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다. 입학은 무시험 전형이고, 수업료 등은 면제되며, 특별학급 소요경비는 학급운영비 일부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산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과목 가운데 2/3 정도를 이수하도록 하고, 현장 실습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운영개선 방안〉에는 첫 시행년도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1977년 4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은 야간특별학급이 25개 학교에 56개 학급이 개설되었고, 학생수는 3,215명이었다. 야간특별학급은 진학한 근로청소년에게 해당 업체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야간특별학급에 참여한 업체는 총 509개였다. 다음으로 부설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3개교 23개 학급에 1,216명이 재학했고, 고등학교의 경우 2개교 105학급에 5,971명이 재학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총 30개 중고등학교에 184개 특별학급이 개설되어 10,506명의 산업체근로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을 시행하였다. 부설학교는 대규모 업체인 경우 독자적으로 부설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일합섬(여고 1), 충남방직(여중1, 고1), 청구목재(여중1), 대농(여중1) 등이 부설학교를 운영하였다. 1977년 4월 기준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설치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 설치현황(1977. 4월)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비고 (취학시키고 있는 산업체수)
	중	고			
야간특별학급	9	16	15	868	160
			41	2,447	349
	25	56	3,315	509	
부설중고교	3	2	23	1,216	한일합섬: 여고1 충남방직: 여중1, 고(남여)1 청구목재: 여중1 대농: 여중1
	2	105	5,975		
	5	128	7,191		
전체	30	184	10,506	-	

* 출처 : 1A00614174959356, 36,691쪽

그러나 특별학급을 개설한지 얼마 안 되어,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났는데, 주요 문제는 교직원의 업무과중, 학급운영비 부족, 야간특별학급 담당교직원 부재 등이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무 2실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주요 방안은 교직원의 수당을 증액하고, 학급운영비를 인상하며, 야간특별학급 전담교직원 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후 산업체근로청소년 특별학급은 점차 확대되다가, 1990년대에 중등교육의 완전취학이 사실상 실현되면서 점차 감소하였고, 2012년 6월 5일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대통령령 제23830호)이 폐지되면서 중단되었다.

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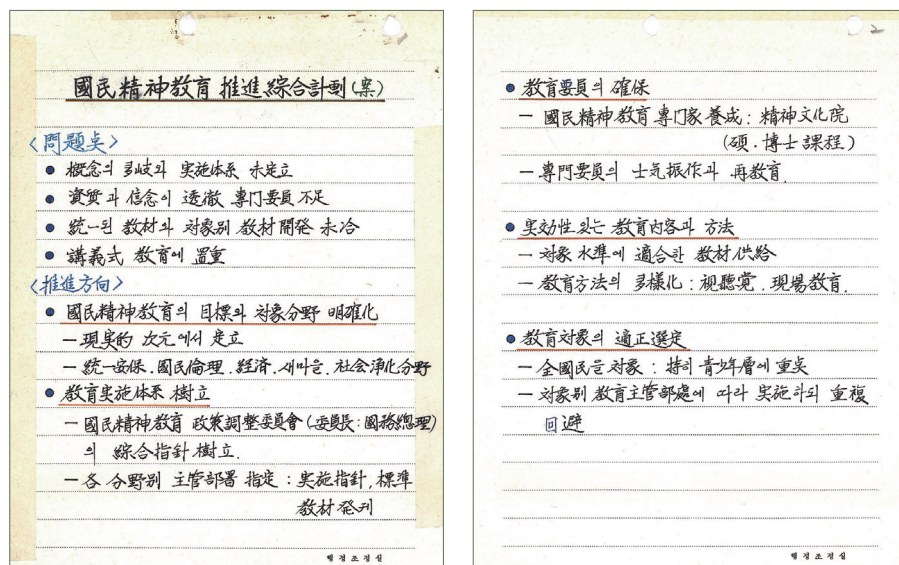
관리번호 : BA0883729

쪽 수 : 15

생산년도 : 1981

생산기관 : 국무조정실

〈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은 1981년 3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던 통일안보교육, 국민윤리교육, 경제교육, 새마을교육 등을 통합하여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민정신교육정책 조정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0442호)을 근거로 수립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 이외에 1981년 12월에 작성한 ‘국민정신교육 추진요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 표지 및 내용 (BA0883729, 95쪽, 96쪽)

제5공화국은 1979년 10.26사태 이후, 신군부가 주축이 되어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1980년 9월 1일 전두환

의 제11대 대통령 취임과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는 그 사전단계였고,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식 출범하였다. 국가비상사태의 와중에서 탄생한 제5공화국은 출범 초기부터 사회비판 세력을 제어하고, 국민통합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1981년 2월에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82~’86) 교육부문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육개혁에 착수하였는데, 이 계획 가운데 정신교육이 첫째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신교육은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주로 학교 교육에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윤리교육과 신설, 교육대학 교육과정 개편, 현직교원의 국민정신교육 연수 강화, 전 교원의 재교육, 각종 학생 군사교육 및 단체활동 강화 그리고 새마을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총 909억 여원의 재정을 책정하였다.

〈국민정신교육 추진 종합계획(안)〉은 이러한 교육부문의 정신교육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문교부가 주관하는 국민정신교육 이외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국민정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정신교육의 범주를 명료화하고, 추진부처를 통괄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즉 국민정신교육의 범위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국토통일원의 통일안보교육, 문교부의 국민윤리교육, 경제기획원의 경제교육 그리고 내무부의 새마을교육으로 명시하였고, 이들 각 부처의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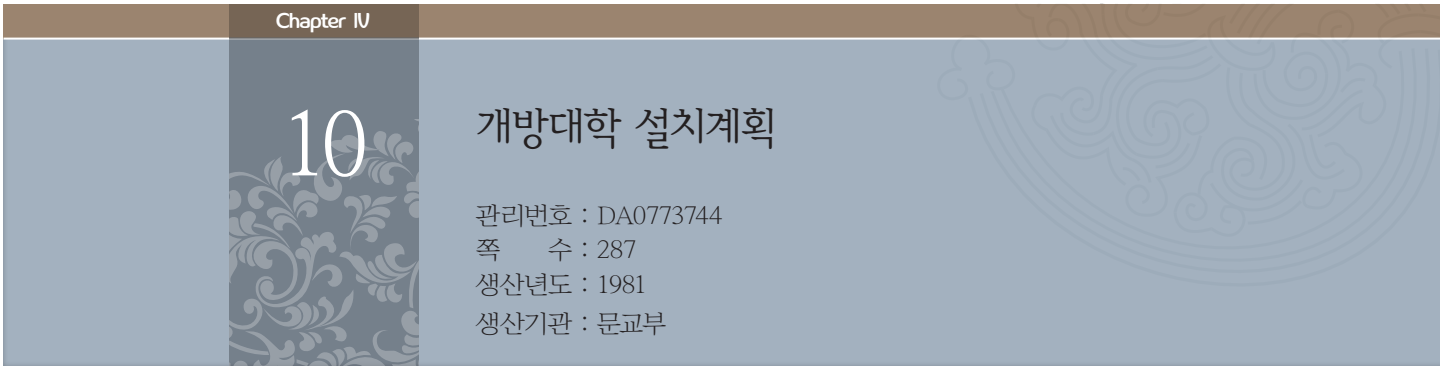
이를 계기로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각 부서가 주관하는 소위원회(예: 통일원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통일안보교육정책조정위)가 설치되고, 그 하위에 각 주관부서의 해당 부처, 그 하위에 각 교육기관이 포진하는 국민정신교육 추진체가 성립하게 되었다. 또한 이 계획은 기존의 국민정신교육의 효과가 부진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대상별 주관부서를 명시하고, 이와 함께 교육전문요원의 양성, 효과적인 교재의 개발·보급, 정기적인 평가 실시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였다.

대상별 주관부서 담당제는 국민정신교육의 대상이 전체 국민인 만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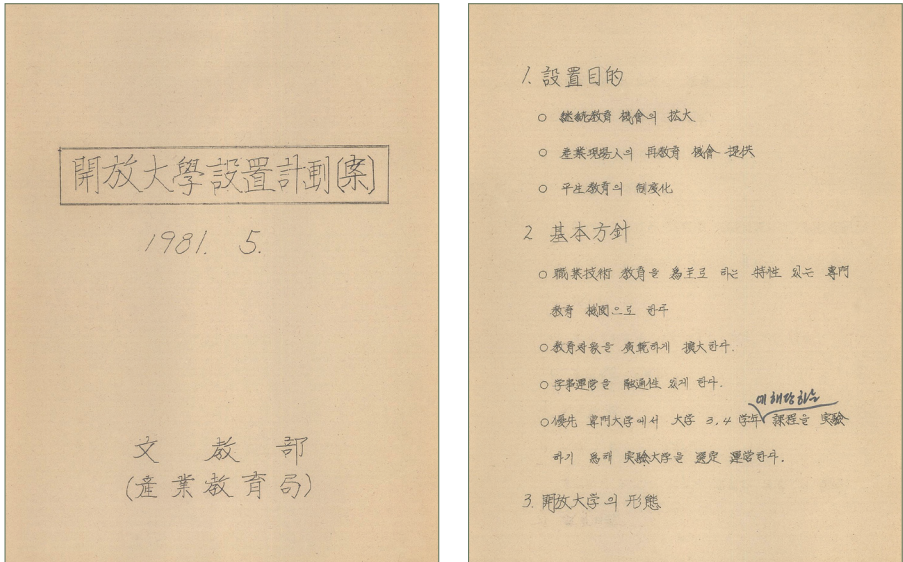
점에서 전문요원은 국토통일원, 공무원은 총무처, 학생 및 교직원은 문교부, 새마을 지도자 및 민방위대는 국방부, 근로자는 노동부, 대중매체 활용교육은 문화공보부, 지도급인사는 문교부가 각각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정신교육의 전문요원 양성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주관하도록 하되 일반 대학의 협조를 얻도록 하였다.

국민정신교육의 교재는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개발하되, 책자의 형태에 통일성을 기하고, 매년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최신의 정보와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민정신교육의 시행 결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2차례 시행하고, 현장의 교육담당기관, 해당 부서 및 부처,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위계적인 계통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민정신교육은 1970년대부터 강화되었던 국민교육헌장교육, 유신교육, 새마을교육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국민정신교육은 1988년에 「국민정신교육 정책조정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중단되었다.



〈개방대학 설치계획〉은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이 가지는 폐쇄성을 완화하고, 연령, 이수기간, 학력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개방형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계획이다. 이 계획은 1981년에 수립되었고, 1982년 2월 경기공업개방대학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1982학년도 경기공업개방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보도자료 및 신문자료, 영국 등의 개방대학 연구 사례, 개방대학설치 세부계획(안), 개방산업대학 실험대학 선정(안), 개방대학 연구추진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개방대학 설치계획에 의한 연구사업 실시계획, 연구 보고서, 개방대학 설치계획(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2】〈개방대학 설치계획〉표지 및 내용 (DA0773744, 93쪽, 94쪽)

개방대학은 1970년대 초 영국(Open University)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 기관이다. 이후 오스트레일리아(TAFE College), 뉴질랜드(Technical Correspondence Institute), 덴마크(Folkehjsskoler), 일본(방송대학), 캐나다(Indendent Study Program), 독일(Fern Universität) 등지에서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처럼 개방대학은 각국마다 명칭이나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직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밀착된 탄력적인 고등직업교육 기관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기존의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은 학력, 연령, 수업기간 등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 이외의 현장 경력이 많은 자, 적정 학령기를 지난 자 등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수업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시간에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고등교육기관 모델로는 고등교육 수학기회를 놓친 다수의 직업인을 수용할 수 없었고, 또한 그것은 직업능력의 고도화를 요구하는 경제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교부는 1981년 5월 산업교육국 및 사회교육국 주도로 개방대학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개방대학 설치의 목적은 계속교육의 기회 확대, 산업현장인의 재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평생교육의 제도화 등이고, 기본방침은 직업기술 교육을 위주로 한 특성 있는 전문교육 시행, 교육대상의 광범위한 확대, 학사운영의 융통적 운영 등이다. 이것은 새로 설립하는 개방대학이 현장 직업인이 고등교육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설치목적과 기본관점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고등교육기관과는 다른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우선 입학자격을 다양화하여 전문대학 졸업자, 실업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 2년 과정 수료자, 대학 2년 과정 수료자로서 전문대학 특별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산업현장 경험이 있는 자로 하였다. 다음으로 현장 직업인이 용이하게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사운영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 근무하면서도 형편에 따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것만 요구하고, 재학기간이나 학기당 이수 학점 등의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학사학위

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학점 취득 부담도 완화하였다. 또한 학점단위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반대학보다 학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개방대학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1981년 6월에는 개방대학 시범운영을 위한 실험대학 선정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와 동시에 기존 고등교육기관, 즉 일반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교육법」 및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방대학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 경기공업전문대학을 개방대학 실험대학으로 선정하고, 1982년 2월 15일에는 「국립대학설치령」을 개정하여 최초의 개방대학으로 개교하였다.

이후 경기개방대학의 실험운영이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지역별, 계열별로 개방대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에는 부산, 대전, 광주개방대학, 1985년에는 군산개방대학이 설립되었다. 1998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11

사회교육법

관리번호 : 1A00614174548254

쪽 수 : 28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법제처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로서,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제정되었다. 전문은 총 6개 장, 3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다. 「사회교육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다음, 1999년에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 기록물은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당시의 관련 문건들로서, 법률 공포 승인서, 법률공포 승인요청 공문, 「사회교육법」, 법률공포 관보 게재요청 공문, 참고 사항, 국회 본회의 통과 통지서 및 「사회교육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3】 〈사회교육법〉 표지 및 내용 (1A00614174548254, 18.961쪽, 18.962쪽)

사회교육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 초까지 실현되지 못하였다. 1948년에는 문맹퇴치를 목표로 하는 「고등공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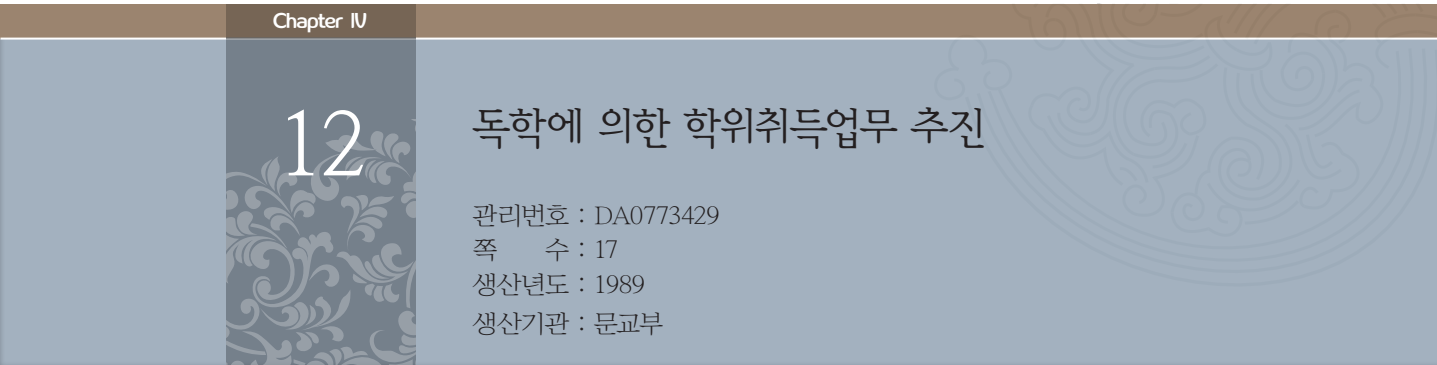
학교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교육법」에 포함되었고, 1952년에는 문교부 성인교육과 주관으로 「사회교육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성안되지 못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기는 했지만, 사회교육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내용이었으며, 1977년에 공화당이 추진한 「사회교육법」 제정도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회교육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 「사회교육법」의 제정 여건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첫째 정부수립 이후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초등교육 의무화 정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중등교육 진학률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학교교육 이외 분야, 즉 사회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둘째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이 확산되고 다양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평생에 걸친 교육기회의 제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다. 1982년에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인 개방대학을 설립한 것은 대표적인 성과이다. 셋째 제5공화국 초기에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이 때문에 「사회교육법」 제정 당시에 이미 정부에서는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신설하여 관련 정부부처를 산하위원회로 조직하고 개별 교육기관까지 포괄하는 일련의 교육체계를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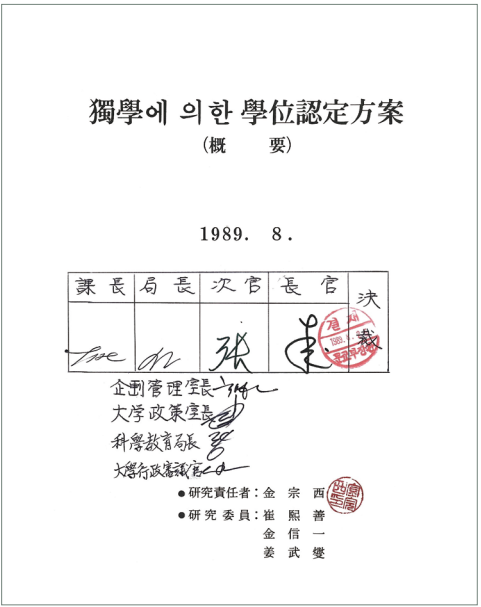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된 데에는 이처럼 오래 동안 추진되었던 법률 제정 노력과 정치, 경제, 교육의 여건 변화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사회교육법」의 제1조에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생에 걸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 모든 국민에게 국민적 자질을 함양시켜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통제의 개념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에서도 확인되는데,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의 선택이나 결정권을 사회교육기관에 위임하고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제7조 1항), 일정한 시간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교양에 필요한 특정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제7조 2항).

이처럼 「사회교육법」은 아직 인간의 기본인권 보장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회균등 및 자율성 보장(제4조)과 사회교육의 중립성(제5조)을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진일보 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권역별로 해당 지역의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을 전담하는 사회교육기관만이 아니라, 도서관 및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사회교육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교육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데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사회교육법」은 3차례 개정되어,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영됨으로써 전문이 개정되어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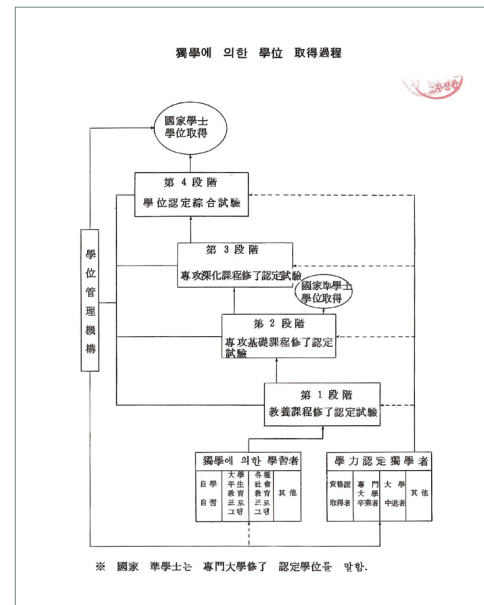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 추진〉 자료는 독학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 방안’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문건이다. 이 기록물은 1989년 9월에 작성되었다. 이 자료에는 문교부에서 중앙교육평가원장에게 세부계획수립을 요청한 공문, 정책자문보고서인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 방안(개요)’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4】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방안〉 표지 (DA0773429, 353쪽)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제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학자습이나 다양한 교육기관 및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한 후,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대학학위제도는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후 유자격자에게 학사 학위나 준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새로운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예를 들면 개방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대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고도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높아지며, 평생교육 이념이 확산되는 배경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



【그림 15】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DA0773429, 361쪽)

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조치로 구체화되었다.

‘독학에 의한 학위인정방안’은 이처럼 새롭게 시도되는 독학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독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독학사 학위의 기본취지는 ①학습자 중심의 독학체제 구축, ②평생교육체제의 확립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기회의 확대, ③학위취득 기회의 다양화, ④독학에 의해 취득한 학위의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질 관리, ⑤독학체제 정착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조성 등이다. 이러한 기본취지에 따라 독학사 학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과 독학사 학위인정 시험제도에 관한 것이다.

우선 독학사의 교육과정 편성은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교양과정, 전공 기초과정, 전공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독학사 교육과정은 일반 대학과 다른 특징이 있다. 첫째 독학사의 학점 취득 방식을 다양화하여, 자학자습,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실험실습의 비중이 높은 전공은 독학사 과정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셋째 일반 대학과 달리 전공의 세분화를 지양하고, 광역의 전공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편성은 독학사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독학사 학위인정 시험제도는 시험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제1단계는 교양과정을 수료한 후에 그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이고, 제2단계는 전공기초과정을 수료한 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이며, 제3단계

는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후 그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4단계는 전체 학위과정을 인정하는 종합시험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시험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위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초기에는 중앙교육평가원에서 담당하였다.

이후 1990년 4월 7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 제4227호)의 제정으로 독학사 제도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990년 10월 21일 6개 전공(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수학, 가정학)으로 개설되었다. 1993년 2월 10일에는 제1회 독학사 종합시험이 시행되었고, 이 시험을 통과한 147명에게 처음으로 학사학위가 수여되었다.

독학사 학위업무는 초기에 중앙교육평가원이 담당하였지만, 1998년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관되었고, 2008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는 이곳에서 독학사 학위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독학사 과정 지원 자도 급증하여 2008년 18,412명에서 2012년 38,476명으로 증가하였다.

개방대학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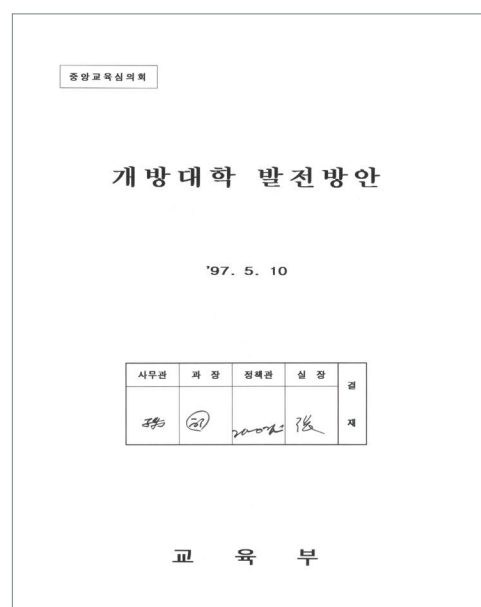
관리번호 : DA0074100

쪽 수 : 117

생산년도 : 1997

생산기관 : 교육부

〈개방대학 발전방안〉은 1997년 5월 10일 교육부의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 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개방대학 특성화 계획이다. 1998년에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칭하면서, 개방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록물에는 〈개방대학 발전방안〉, 8개 국립개방대학의 특성화 계획 개요, 중앙교육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6】 〈개방대학 발전방안〉 표지
(DA0074100, 52쪽)

달함에 따라 일반전형 입학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사운영 방식 또한 시간제 수업보다는 일반대학과 같은 전일제 수업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경기공업개방대학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개방대학은 점차로 증가하여 1997년 기준 국립개방대학 8개교, 사립개방대학 11개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발전에 비하여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방대학 설립의 기본 취지가 약화되고,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개방대학 설립의 기본취지는 직업 근로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탄력적인 학사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직업 근로자를 입학시키는 특별전형이 지속적으로 미



【그림 17】 개방대학 분포도 (DA0074100, 63쪽)

있는 시설 및 기자재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현장실습교육에 필요한 각 사업장의 협조도 원만하지 않았다. 개방대학의 교수진 또한 현장 직업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이론가 중심이었던 것도 개방대학의 교육효과를 높이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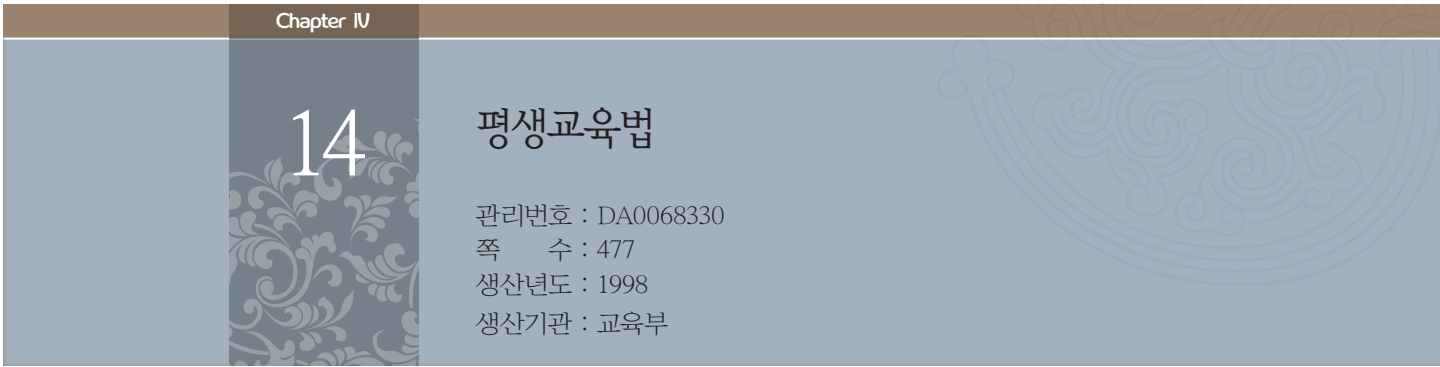
〈개방대학 발전방안〉은 이러한 개방대학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질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대책도 개방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측면과 교육효과를 높이는 측면 두 가지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우선 개방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대책으로는 대학별로 특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국가는 그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비교적 개방대학의 특성을 살린 국립개방대학(8개교)은 대학별 특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사립개방대학(11개교) 중 7개 대학은 특성화 정책을 유도하고 나머지 4개 개방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은 주로 개방대학의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모아졌다. 산업체의 직무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기별 과제(term project) 및 인턴십 제도 등을 도입하여 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실용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직업기초능력을 함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입학전형별 학생의 학업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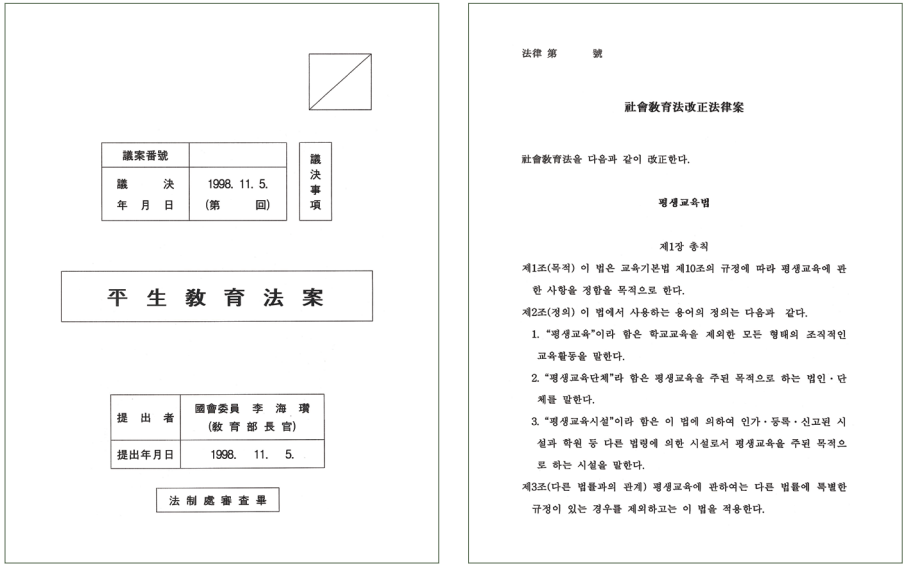
기 때문에, 주간은 일반전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야간은 특별전형 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함으로써, 학생별 능력과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방대학의 주 교육대상이 원래 현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수업료 등을 국고로 보전함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고 졸업자는 교장추천제를 통해 특별전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현장 능력이 풍부한 전문가의 교원 임용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동을 강화하며,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개방대학 발전방안〉에 따라, 정부는 1997년 12월까지 개방대학 특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지원을 746억 원(1996년)에서 991억 원(1997년)으로 증액하며, 1998년부터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칭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여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공포되었다. 전문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장 평생교육사, 제4장 평생교육시설, 제5장 보칙 등 5개 장 32개 조문과 부칙 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평생교육법(안)’,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평생학습법(안)’, 평생학습법 제정 시안 공청회 요약문, 평생학습법 제정 기본 계획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8】〈평생교육법〉표지 및 내용 (DA0068330, 1쪽, 5쪽)

1982년 12월 31일 「사회교육법」(법률 제3468호)이 제정됨으로써,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인간은 평생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측면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국민소양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가의 필요를 강조하는 측면이 혼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에 대하여 1990년대 말 새교육공동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개혁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일었고, 이에 따라 「사회교육법」의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기본 계획에는 법 제정의 기본방향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여기에는 ‘종전의 공급자(교육자) 중심의 사회교육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수요자(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사회교육법을 폐지하고 평생학습법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형식적 학력위주의 사회를 실질적 능력위주 사회로 전환하고, 성인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질을 고등교육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평생교육법」은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참고하면서도, 평생교육의 이념, 수준, 조직 그리고 지원의 제 측면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 제정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평생교육의 이념에서는 권리로서의 평생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여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 실행조직 그리고 공공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교육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일이 되었다.

「사회교육법」 단계까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교육기관과 일반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적 연관성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지만,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을 사실상 일반 학제의 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능한 강사요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사정보은행제를 운영하고(제16조), 기존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을 평생교육사로 전환하여 자격을 강화하고 실제 교수업무도 수행하게 하는 규정(제17조)을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실행조직 강화의 측면에서는 중앙의 평생교육원과 지역별 지역평생학습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미 시행되고 있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1990. 4. 7, 법률 제4227호) 및 학점은행제(1997. 1. 13.)와 연계하여 평생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통한 고등교육의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의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로는 지방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나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에게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제7조)을 신설함으로써, 평생교육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평생교육법」의 제정은 1997년 이후 정립된 교육 3법 체제, 즉 교육의 이념과 기본원칙은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 학교교육 관련 법에서 규정하며,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회교육법」 등에서 규정하도록 한 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의미도 갖는다.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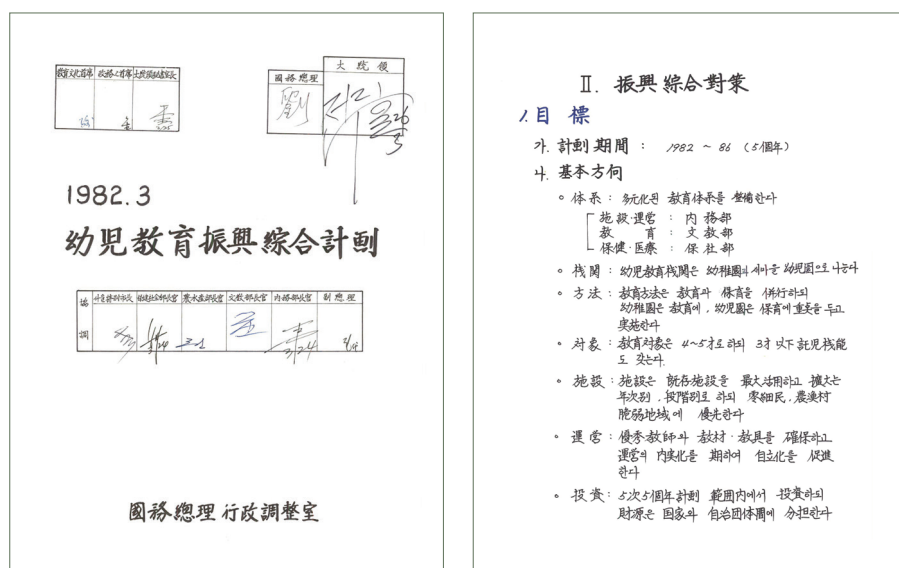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542763

쪽 수 : 24

생산년도 : 1982

생산기관 : 행정조정실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은 1982년 3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작성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1982~1986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진흥종합대책, 행정사항, 부처별 추진사항 등으로서, 1980년대 이후 유아교육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 계획의 일환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3635호)을 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진흥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19】〈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표지 및 내용 (1A00614174542763, 39쪽, 47쪽)

유아교육은 1970년대까지 큰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법」에 유치원 관련 조항을 수록하고, 「교육법시행령」과 「유치원시설기준령」 등을 제정하였지만, 초등교육 의무화 정책에 밀려 본격적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50년 5월 ‘국립유치원 설

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6.25전쟁의 발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970년대까지 유치원 취원율은 2% 정도에 머물러,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교육의 질도 높지 않아서, 전문적인 유아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유치원 교육과정조차 1969년 문교부령으로 제정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에도 크게 변화가 없지만, 1972년 국무총리 산하 장기종합 교육심의회가 ‘장기종합교육계획(안)(1972~1986)’을 수립한 것은 유아교육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 계획은 향후 15년에 걸친 장기간의 교육계획으로서, 유아교육도 취학전 교육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1970년대 국내외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1970년에는 유네스코가 ‘세계 교육의 해(International Education Year)’를 선포하고 평생교육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1976년에는 북한이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진흥에 대한 자극이 되었다. 행동과학연구소가 ‘국가발전과 어린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환산시킨 것도 이 즈음인 1975년 5월이다.

그러나 1979년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으로 헌정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웠다. 1982년 3월에 수립한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은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을 재개하는 시발점이었고, 1980년대 유아교육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이 계획에서 파악한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유아교육체계의 난맥상이다. 당시 보건사회회부는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은 농번기유아원, 내무부는 새마을유아원, 문교부는 유치원을 각각 관리하고 사업과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부처 간 업무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시설 및 운영은 내무부, 교육은 문교부, 보건 및 의료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부처별 역할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유아교육기관의 절대적 부족이다. 1982년 당시 유아교육 취원율은 14.7%에 그쳤고, 지역적·계층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안)은 유아교육기관을 1986년도까지 4,342개에서 10,244개로 증설하고, 특히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유아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는 유아교육의 질이 낮다는 점이다. 당시 무자격 유아교사는 46%였고, 특히 유아원의 경우는 87%에 달하였다. 또한 교구나 시설도 열악하여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

악한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1982년 말까지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유아교육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진흥법」은 1982년부터 본격화된 유아교육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아교육진흥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러한 배경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 및 농번기유아원으로 다원화된 유아교육체계를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조정 정비하고, 부족한 유아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육내용의 충실화를 기하여, 평생교육의 기반이며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 유아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르는 「유아교육진흥법」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유아교육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의하며, 국가는 유아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교재 교구의 연구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교원의 양성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아를 위한 보건과 치료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제3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명시하였는데, 유아교육 시행 계획의 수립,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확충, 유아를 위한 보건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은 유아교육을 공적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유아교육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 및 유아원 그리고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9조). 또한 인가 이후에도 인가청 및 교육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제6조 및 제12조). 이러한 규정들은 유아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의 자격과 직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새마을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새마을

유아원 교직원의 종별 자격과 관련하여 명예직인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원장·원감·교사는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원장·원감 및 교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였다(제14조 3항 및 4항). 그리고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사의 자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14조 5항). 그리고 새마을유아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원장·원감·교사·보육사별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제15조).

이처럼 「유아교육진흥법」은 유아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 진흥의 기본적인 조건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범주를 확정함으로써,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아교육 체제를 문교부가 주관하는 유치원 및 유아원과 내무부가 주관하는 새마을유아원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유아교육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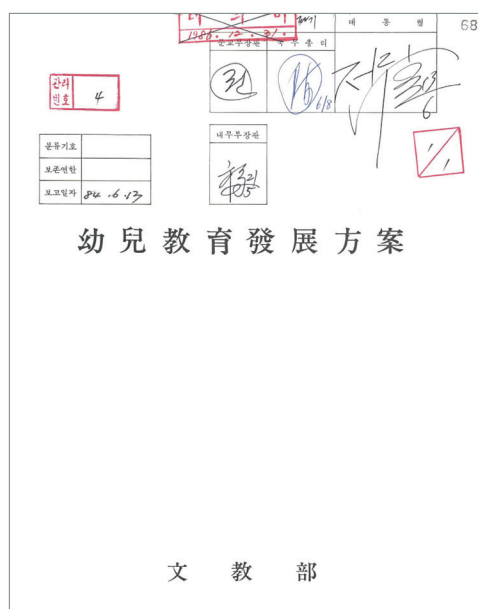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4554971

쪽 수 : 15

생산년도 : 1984

생산기관 : 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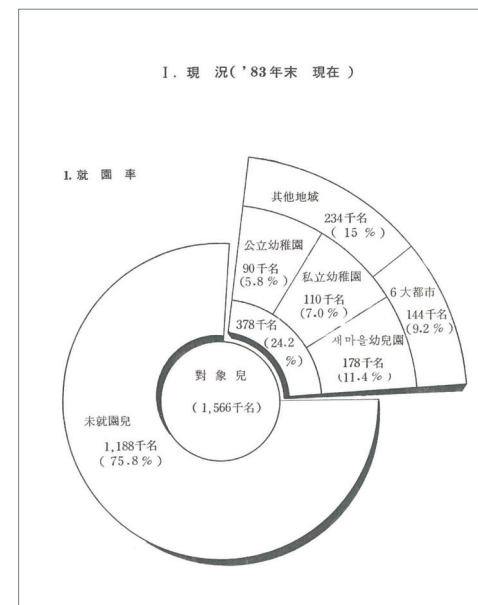
〈유아교육 발전방안〉은 1984년 6월 문교부가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계획이다. 이 방안은 1982년 3월의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면서, 문교부가 주도하여 관련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행(1983년 말), 목표, 유아교육 확대계획, 방침, 대책, 추진계획 등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표지에 문교부 및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의 승인 사인이 표기되어 있고, 다음에 〈유아교육 발전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21】〈유아교육 발전방안〉표지
(1A00614174554971, 1,214쪽)

〈유아교육 발전방안〉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정하여, 1986년까지 유아교육기관 증설 정책 계획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유아교육

1982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유아교육기관의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종합방안을 5개년(1982~1986년) 계획으로 수립하였다. 이 종합계획은 이후 유아교육 정책의 기본방침이 되었고, 1982년 12월 31일에는 「유아교육진흥법」(법률 제3635호)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체제는 문교부가 주관하는 유치원과 내무부가 주관하는 새마을유아원으로 정비되었고, 유아교육기관의 증설도 애초의 예상보다 상회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림 22】 1983년 말 기준 취원율 현황
(1A00614174554971, 1,215쪽)

발전방안〉에 수록된 1983년 말의 현황을 보면, 유아교육 대상자 가운데 24.7%(37만 8천 명)가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2년 초의 14.7%(23만 명)와 비교할 때, 10%가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 상황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4.7%에서 5.8%로, 사립유치원은 4.9%에서 7.0%로, 새마을유아원은 1.1%에서 11.4%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지난 2년 간 새마을유아원 > 사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순서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은 새마을유아원을 중심으로 또 원래의 계획보다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교부는 유아교육기관 증설계획을 3가지 측면에서 수정하게 되었다. 첫째는 유아교육기관 증설 목표를 원래보다 상향 조정하였다. 1982년의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에서는 목표 연도인 1986년의 취원율을 38%(64만 2천 명)로 잡았지만, 〈유아교육 발전방안〉에서는 43%(71만 9천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것은 최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최근의 증가 속도를 고려한 조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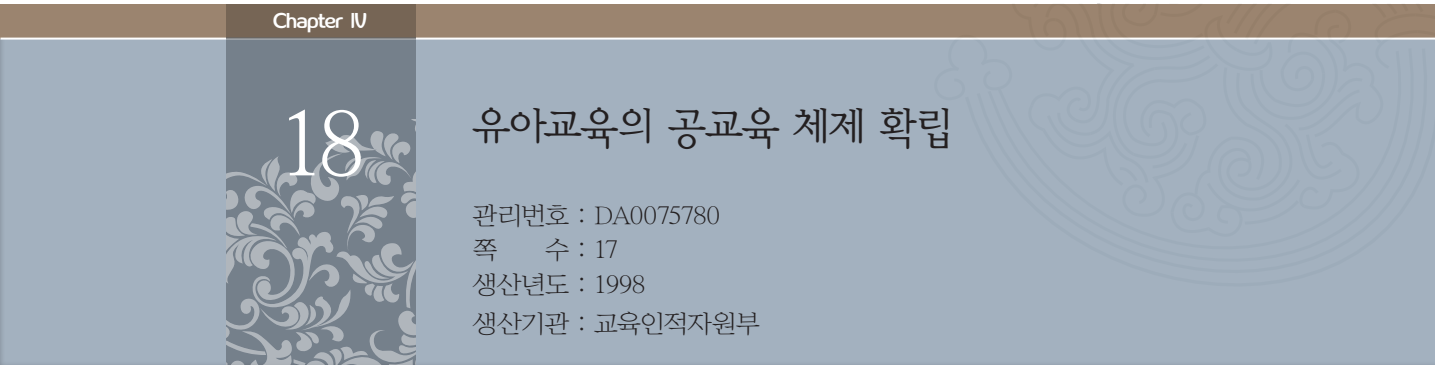
둘째는 유아교육기관 증설에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동안은 주로 새마을유아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이 증설되었고,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방식이었다. 새마을유아원에는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발전방안〉에서는 증설의 우선 순위를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순으로 변경하였다. 즉 사립유치원은 확대하고, 공립유치원은 자립운동을 유도하며, 새마을유아원은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사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조치는 납입금을 자율화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을 유도하고,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새마을유아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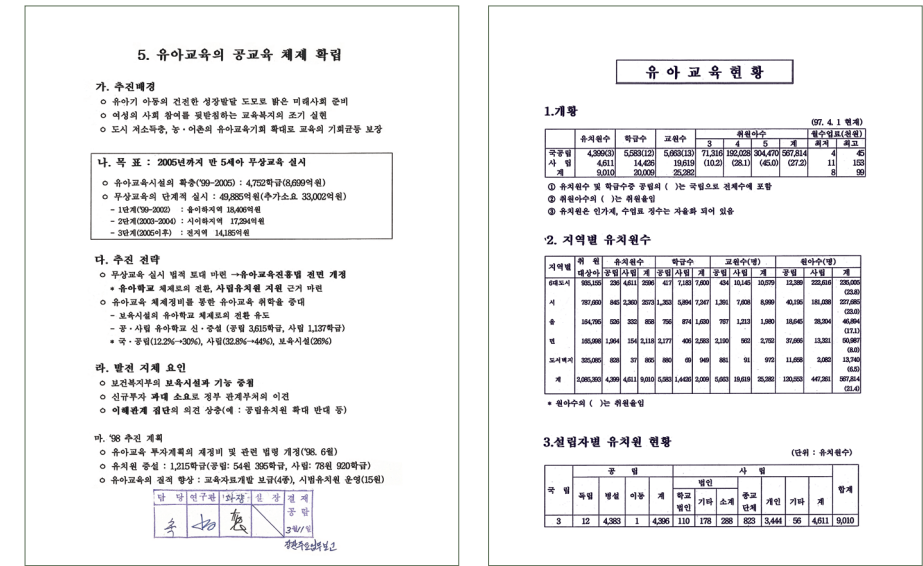
되, 읍 이상 지역에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여 자립경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유아원은 가급적 도시 영세민집단 지역과 광산근로자 집단거주 지역 등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증설도 원래의 계획보다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새마을유아원은 자립 경영을 유도하여 점차 재정 지원을 감소시키고, 1987년에는 완전한 자립경영 체제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새마을유아원은 문교부가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문교부는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을 증설하는 정책 이외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유아교육 강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방송 시간대를 유아 시청이 편한 시간대로 편성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유아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며, 유아교육 전문가의 자문 강화와 방송 제작진의 세미나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의 보육기능을 강화하여 만 4세 이하 영유아의 취원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1984년에 우선 10개 시범유치원에서 운영한 후, 198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점에서 〈유아교육 발전방안〉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사립유치원 중심의 확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향후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부담을 주게 되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은 1996년 4월 9일에 구성된 제2기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수립한 교육개혁(안)에 수록된 자료로서,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다. 주요 내용은 추진배경, 목표, 추진전략, 발전 저해 요인, '98 추진 계획 등이다. 이 기록물에는 표지에 담당자의 결재 사인과 이 자료가 장관 주요업무 보고라는 표시가 있고, 주요 계획 내용 및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3】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표지 및 내용 (DA0075780, 168쪽, 169쪽)

1980년대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강화되었다. 1982년 3월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의 제정, 1984년 6월 ‘유아교육 발전방안’ 등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기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는 재정 부담 때문에 주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유아교육의 계층적, 지역적 편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1993년 12월 31일부터 유아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던 새마을유아원이 대부분 보육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열악계층의 유아교육 상황은 한층 악화되었다. 이 점은 공·사립별 취원을 추세를 나타낸 다음의 【표 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연도별, 설립별 취원율 추이(5세아)

연도별	1981	1986	1990	1994	1995	1996	1997
국공립	8.8	18.5	14.1	11.9	12.1	11.8	12.2
사립	8.5	20.3	30.0	32.4	32.2	33.0	32.8
계	17.3	57.1	55.4	44.5	44.4	44.8	45.0

* 출처 : DA0075780, 170쪽

이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유아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며,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지역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8,699억 원을 투자하여 4,752개 학급을 증설하고, 4조 9,885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단계(1999~2002년)는 읍 이하 지역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2003~2004년)는 시 이하 지역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3단계(2005년 이후)는 무상교육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유아교육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우선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아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유아학교 체제로 전환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유아교육 관련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는 데에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문제 이외에, 문교부가 관장하는 유치원 시설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보육시설 기능이 중첩되는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이 공립유치원 확대를 반대하는 문제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할 법적 기반으로서 새로운 유아교육 관련 법 제정도 지연되었다. 원래의 제안은 1998년에 곧바로 제정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2004년에야 「유아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은 원래 보다 6년이 지연된 상태에서 진행된 셈이다.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이제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호자와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적 지원정책에 그쳤으나, 200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의 만 3~4세 유아와 모든 계층의 만 5세 유아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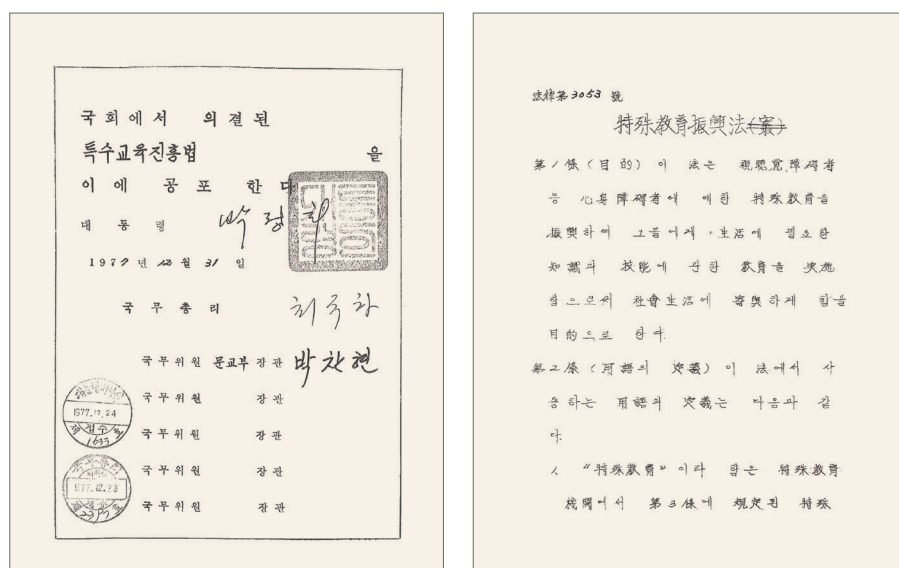
관리번호 : 1A00614175011538

쪽 수 : 43

생산년도 : 1977

생산기관 : 법제처

「특수교육진흥법」은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에서 197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053호로 제정되었다. 전문은 총 1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는 법률공포 승인 요청서, 법률공포 승인서, 「특수교육진흥법」, 법률안 관보게재 요청서 및 참고사항, 국회 본회의 법률 통과 통지서 및 「특수교육진흥법(안)」, 법률안 국회제출 공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24】〈특수교육진흥법〉표지 및 내용 (1A00614175011538, 93,407쪽, 93,408쪽)

특수교육은 각종 심신 장애로 인하여 일반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이를 대상으로 별도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특수교육은 광복 이후 미군정 하에서 제생원의 맹아부를 국립맹아학

교로 개칭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특수교육에 관한 관심은 「교육법」 제정 당시에도 반영되어, 심신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다(제81조 제6항).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주로 사립특수학교에 의존하여 특수교육을 시행하였다.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강화된 것은 1970년에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향후 15년에 걸친 ‘장기교육계획(안)(1972~1986)’을 수립하고, 그 가운데 특수교육 분야를 독립하여 장기계획을 세우면서부터였다. 비록 장기교육계획(안)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데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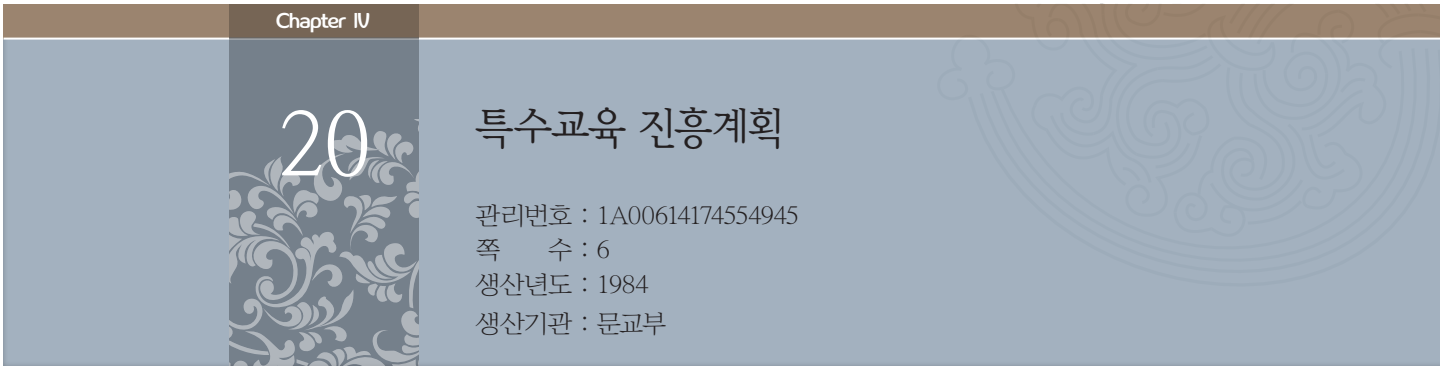
「특수교육진흥법」의 중요한 의미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 특수교육의 무상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데에 있다. 첫째 특수교육 대상자에 관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박약자, 지체부자유자, 정신장애자, 언어장애자, 기타의 심신장애자 등이다. 이러한 규정은 이제까지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에 한정하여, 특수교육이 주로 농맹학교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특수교육의 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처럼 특수교육의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반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의 교육도 인정함으로써 장애자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강화에 관해서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사항과 관련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항목은 ①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②생활기능 회복을 위한 요육(療育), ③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④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 및 개선, ⑤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 및 우대책 마련, ⑥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및 시설 설비의 확충 및 정비, ⑦특수교육용 교재·교구 및 보장구(補裝具)의 연구 개발, ⑧직업보도시책의 강구, ⑨점자도서관 등의 설치·경영과 조성, ⑩장학금 기타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상당히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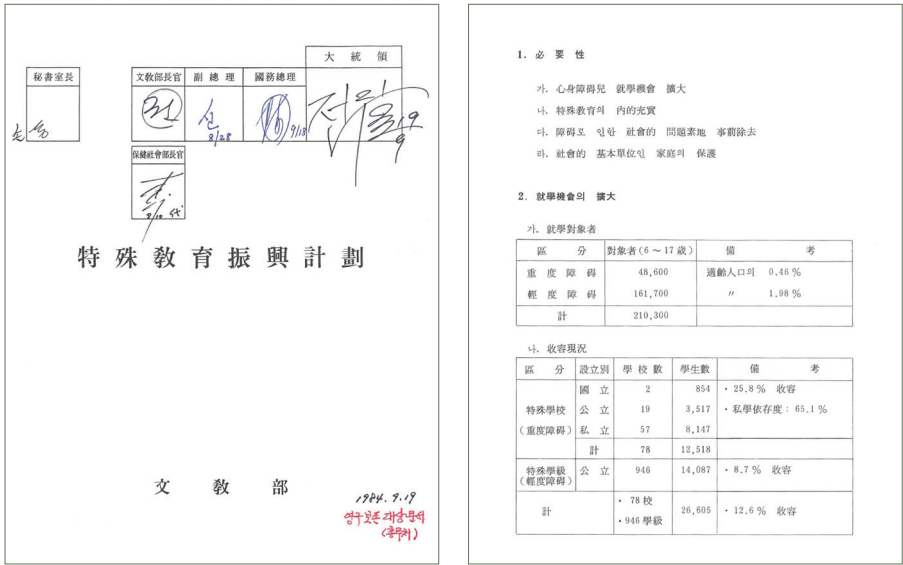
셋째 특수교육의 무상교육 강화에 관해서는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5조

에서는 국공립특수학교 취학자 및 의무교육단계의 사립특수학교 취학자의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허용하였다.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은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어서,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이후 1980년대에는 1984년 ‘특수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1988년 장애인 올림픽의 개최로 특수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한 단계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수교육 진흥계획〉은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교부가 1984년에 수립한 7개년(1985~1991년) 계획이다. 〈특수교육 진흥계획〉은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연장선에서, 특히 1988년에 개최 예정인 국제 장애인 올림픽에 대비하여 마련되었다. 이 기록물 표지에는 문교부 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 부총리,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의 사인이 표시되어 있고, 영구보존 대상 문서(총무처)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 25】〈특수교육 진흥계획〉표지 및 내용 (1A00614174554945, 997쪽, 999쪽)

〈특수교육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진흥의 필요성, 취학기회의 확대, 의무교육 확대, 교육의 내실화로 구성된다. 이 계획은 특수교육진흥의 필요성에 대해서

①심신장애아 취학기회 확대, ②특수교육의 내적 충실, ③장애로 인한 사회적 문제소지 사전 제거, ④사회적 기본단위인 가정의 보호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자체와 관련된 필요성은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 정책은 취학기회의 확대와 의무교육의 확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1984년 당시의 특수교육 상황은 중도장애자 48,000명, 경도장애자 161,700명 등 총 210,300명의 대상자 가운데 26,605명(12.6%)만이 각종 특수교육 기관에 취학하고 있었다. 장애별, 설립별 구체적인 취학상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장애별, 설립별 특수학교 취학 상황

구분	설립별	학교수	학생수	비고
특수학교 (중도장애)	국립	2	854	- 25.8% 수용 - 사학의존도: 65.1% - 25.8% 수용
	공립	19	3,517	
	사립	57	8,147	
	계	78	12,528	
특수학급 (경도장애)	공립	946	14,087	- 8.7% 수용
계		- 78개교 - 946개 학급	26,605	- 12.6% 수용

* 출처 : 1A00614174554945, 999쪽

이러한 상황은 아직 심신장애자 대부분이 취학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사회적,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특수교육을 진흥하는 우선적인 정책은 취학률을 높이는 데에 두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계획에서는 1991년까지 중도장애자는 전원 취학시키고, 경도장애자의 경우는 전체의 40%를 취학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도장애자 대상 특수학교를 76개교 신설하고, 경도장애자의 경우에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2,415개소에 병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학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장려하고, 복지시설(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강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까지 의무교육 대상이 초등교육 단계에 한정되어서, 심신장애자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등교육 단계의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계획에서는 국공립 및 사립을 막론하고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전면 무상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특수교육진흥법」의 기본 정신과 연결되는 것으로서, 당시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개발 및 보급(점자교과서, 장애보상용 교재 및 학습자료:55종), ②특수교원의 국내외연수 확대, ③체육교육 강화(88국제장애자올림픽 대비) 등의 방안을 수립하였다.